제315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4월15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2. 생태계위해 외래생물관리법안
2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4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6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6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7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7. 환경부, 환경공단, 충주시의 충주시 소각장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 불법 조작 감시 부실에 대한 감사요구안

78. 보령공군사격장 인근 환경피해 조사 및 보령 앞바다 환경정화 긴급요청에 관한 청원
79.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0. 물관리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8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7.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49. 미성년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50.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5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5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5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5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57. 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1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5.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

16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7.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16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6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7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7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7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7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7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2.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183.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84.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8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86.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87.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88.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89.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90.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91.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4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유대운・홍종학・민홍철・양승조・강기윤・이상민・김제남・배기운・이재영 의원 발의) ····· 14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권성동・전하진・김영우・김상민・김세연・김용태・이완영・나성린・박상은・정의화・윤명희・이종훈・송광호・신성범・박민식 의원 발의) ····· 14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유대운・민홍철・박성효・안민석・주승용・박병석・박범계・김현미・정진후 의원 발의) ····· 14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경대수・김상민・김성태・민홍철・박성효・서용교・이종훈・주영순・최봉홍 의원 발의) ····· 15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은수미・이에리사・정희수・정문헌・이철우・신동우・조명철・조원진・김상민・윤명희 의원 발의) ····· 15
9.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홍지만・권은희・이종진・심학봉・윤재옥・최봉홍・주호영・김재원・성완종 의원 발의) ····· 15
1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관영・노영민・박기춘・서영교・윤관석・은수미・진성준・장하나・홍영표 의원 발의) ····· 15
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金永柱・이만우・김정록・이에리사・박창식・이우현・박인숙・이재영・최동익・신성범 의원 발의) ····· 15
1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유인태・원혜영・홍의락・정세균・김관영・이춘석・백재현・김광진・김태년・김성주・김재윤・심재권・홍종학・한명숙・김세연 의원 발의) ····· 15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은수미・장하나・배재정・신기남・한정애・우원식・이낙연・이윤석・심상정 의원 발의) ····· 15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대동・정희수・홍영표・이재영・이만우・김을동・김정록・여상규・심학봉・서용교・윤명희・문대성・강은희・송영근 의원 발의) ····· 15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1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장하나・박수현・우원식・이낙연・이윤석・전순옥・김상희・강동원・강창일 의원 발의) ····· 15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미경・배기운・전병헌・박홍근・민홍철・김성곤・강동원・유성엽・홍종학 의원 발의) ····· 15
2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강동원・김광진・김미희・김승남・김영주・김태년・박인숙・배기운・신경민・유대운・유성엽・은수미・전정희・정성호・최동익・홍종학 의원 발의) ····· 15
21.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김경협・김광진・김태원・남인순・박원석・배기운・심상정・은수미・전순옥・정성호・정진후・한명숙・한정애・홍영표・홍종학 의원 발의) ····· 15
22. 생태계위해 외래생물관리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이한성・강은희・성완종・김태원・김장실・최경환・이윤석・유승민・송영근・강석호・김성찬・김재원・서용교・유성엽・박인숙・장윤석 의원 발의) ····· 15
2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제남・김미희・신장용・우윤근・배기운・김우남・홍종학・문병호・강동원・김성곤・전정희 의원 발의) ····· 15
2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 의원 대표발의)(이종진・유승민・서상기・황진하・노철래・이완영・윤재옥・경대수・유승우・이채익・李宰榮・민현주・홍지만 의원 발의) ····· 15
2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유성엽・김광진・李宰榮・강동원・문병호・전순옥・이낙연・김성곤・김동철・배기운・홍종학・김춘진・민홍철・윤관석・유은혜 의원 발의) ····· 15
2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李宰榮・이노근・이이재・안효대・김태흠・강석호・이종진・이헌승 의원 발의) ····· 15
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정희수・강기윤・김태환・신성범・윤명희・김세연・김을동・정문헌・문대성・이상일・송영근・민현주・박대출・주영순 의원 발의) ····· 15
2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유승우・주영순・황영철・김상훈・서용교・이낙연・신성범・김경협 의원 발의) ····· 16
2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3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만우・정희수・류지영・홍지만・김한표・김춘진・송영근・강은희・고희선 의원 발의) ····· 16
3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34.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최봉홍・김성주・신경민・한정애・장하나・홍종학・홍영표・김용익・김성곤 의원 발의) ····· 16
35.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정희수・홍문표・김우남・이자스민・민병주・이채익・강은희・이상일・김영록・김을동・고희선 의원 발의) ····· 16
3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신성범・이장우・윤재옥・김장실・박대출・유정복・조원진・류성걸・안홍준 의원 발의) ····· 16
3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3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한정애・전순옥・배기운・박수현・박홍근・홍영표・김우남・인재근・윤관석・홍종학・정진후・전정희 의원 발의) ····· 16
3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배재정・은수미・이목희・임수경・진성준・홍영표・홍희락・한명숙 의원 발의) ····· 16
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4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은수미・박수현・우원식・장하나・박남춘・진성준・전병헌・안규백・이석현 의원 발의) ····· 16
4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관영・김영주・노영민・배재정・심상정・우원식・은수미・장하나・전순옥・홍영표・한명숙 의원 발의) ····· 16
4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박남춘・이찬열・장병완・이원욱・김현미・강기정・김우남・윤호중・박주선・김관영・조정식・원혜영・김진표 의원 발의) ····· 16
4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이강후・정희수・이만우・강은희・김태원・최봉홍・이종진・김상민・서용교・박대동 의원 발의) ····· 16
4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변재일・심상정・우원식・은수미・이완영・장하나・전순옥・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 ····· 16
4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우남・최규성・양승조・강기정・정성호・최동익・조정식・김성주・심재권 의원 발의) ····· 16
4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정문헌・김정록・박성호・안홍준・정희수・김재원・김기선・황영철・염동열・권성동・한기호 의원 발의) ····· 16
4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문정림・유기준・정성호・신경림・이에리사・이현재・서상기・이명수・김태호 의원 발의) ····· 16
4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박주선・김우남・이상민・안민석・정세균・유성엽・김승남・김성곤・김관영 의원 발의) ····· 16
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최봉홍・김성주・신경민・한정애・장하나・홍종학・홍영표・김용익・김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3) ····· 16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홍영표・김기준・임내현・김경협・심상정・전순옥・장하나・최봉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2759) ····· 16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김현숙・홍지만・박민식・유기준・김정록・전하진・이만우・정갑윤・황영철・이채익 의원 발의) ····· 16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李宰榮・최봉홍・이채익・박대출・이만우・이한성・송영근・조원진・박성호・이헌승・박인숙・강석훈・김회선・류지영・이에리사 의원 발의) ····· 17
5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5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염동열・한기호・서용교・서영교・金永柱・민병주・서상기・정갑윤・박성호・김한표・최봉홍・강은희・정호준・이에리사 의원 발의) ····· 17
5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서기호・최동익・윤관석・전정희・이상직・최민희・조경태・유성엽・은수미・장하나・정성호 의원 발의) ····· 17
5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안민석・양승조・우윤근・신장용・장병완・조정식・이상민・이미경・박완주 의원 발의) ····· 17
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李宰榮・최봉홍・김기현・이채익・박대출・이만우・김광진・이한성・조원진・박성호・심재철・이헌승・박인숙・강석훈・김회선・이자스민・이에리사・조명철 의원 발의) ····· 17
5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6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최봉홍・김성주・신경민・한정애・장하나・홍종학・홍영표・김용익・김성곤 의원 발의) ····· 17
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李宰榮・최봉홍・이채익・박대출・이만우・이한성・송영근・조원진・박성호・이헌승・박인숙・강석훈・류지영・이에리사 의원 발의) ····· 17
6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6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정문헌・고희선・정희수・김태원・이명수・신성범・윤재옥・이노근・박인숙・김춘진・전정희 의원 발의) ····· 17
6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李宰榮・유승우・유승민・성완종・하태경・손인춘・이노근・이종진・김태흠・이이재 의원 발의) ····· 17
6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6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경협・김제남・서기호・박원석・장하나・정진후・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 17
6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17
7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장하나・홍종학・최봉홍・김기식・최동익・김용익・김성곤・김제남・신경민・진선미 의원 발의) ····· 17
7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대표발의)(노철래・손인춘・권성동・이재영・염동열・이우현・김세연・홍문표・김정록・김태원・민현주・주영순・정수성・이강후・박인숙・이종진 의원 발의) ····· 17
7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배기운・김우남・홍익표・이명수・이낙연・진성준・이상직・김태년・김태원・남인순・장하나・정성호・유기홍・윤관석・홍종학・안민석・김성곤・전정희・유대운・박남춘・전해철・이원욱・민홍철・박혜자 의원 발의) ····· 17
7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김관영・남인순・문희상・박홍근・배기운・신기남・신장용・우윤근・유대운・윤호중・홍종학 의원 발의) ····· 17
7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동철・이상민・유대운・오제세・홍종학・유성엽・김영록・최규성・김재윤 의원 발의) ····· 17
7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박성호・강기윤・이우현・이노근・강길부・서용교・김성태・최봉홍・주영순・강은희 의원 발의) ····· 17
77. 환경부, 환경공단, 충주시의 충주시 소각장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 불법 조작 감시 부실에 대한 감사요구안(장하나・김광진・김우남・박수현・박원석・심상정・유성엽・은수미・이낙연・

이언주・인재근・정진후・홍종학 의원 발의) ····· 18
78. 보령공군사격장 인근 환경피해 조사 및 보령 앞바다 환경정화 긴급요청에 관한 청원(손인춘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8
79.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18
80. 물관리 기본법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18
8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18
8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배기운・김미희・민홍철・오병윤・김재연・이석기・이상규・최규성・유은혜 의원 발의) ····· 35
8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박성호・강기윤・이우현・서용교・김성태・최봉홍・이종훈・강은희・김상민 의원 발의) ····· 35
8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만우・김관영・박인숙・유성엽・이인제・이재균・민홍철・문정림・조현룡 의원 발의) ····· 36
8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도종환・문병호・박남춘・배기운・백재현・서영교・신경민・우윤근・유대운・유승민・유승희・유은혜・이학영・전병헌・전정희・주승용 의원 발의) ····· 36
8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현재・이종훈・고희선・정문헌・이명수・이자스민・강석호・김동완・김종태・이노근・박성호 의원 발의) ····· 36
8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하나・박홍근・은수미・김경협・윤관석・이미경・우원식・이상규・남인순・유승희・한명숙・원혜영 의원 발의) ····· 36
8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배기운・전정희・인재근・최민희・김춘진・홍종학・백재현・강기정・이춘석 의원 발의) ····· 36
8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오제세・김민기・최규성・홍의락・김현미・양승조・박남춘・최민희・김성주・김광진・김영록・안규백・이종걸・정성호・김우남・강기정・김관영・박영선・김춘진・원혜영・유기홍・배기운 의원 발의) ····· 36
9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현재・이종훈・고희선・정문헌・이명수・박성호・박상은・강석호・김동완・김종태・이노근・이자스민 의원 발의) ····· 36
9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하태경・전하진・문대성・김세연・김재경・김동완・김상민・이노근・이강후・여상규・신경림・정갑윤 의원 발의) ····· 36
9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하나・박홍근・은수미・김경협・윤관석・이미경・우원식・이상규・남인순・유승희・한명숙・원혜영 의원 발의) ····· 36
9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880) ····· 36
9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445) ····· 36
9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9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김상희・박원석・박홍근・서기호・신경민・심상정・우원식・윤관석・전병헌・정진후・홍영표 의원 발의) ····· 36
9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이만우・정희수・김정록・류지영・전정희・민현주・강은희・이한성・김상민・최봉홍 의원 발의) ····· 36
9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신장용・권은희・정문헌・이만우・김광진・이종진・김춘진・박성호・박인숙・김태원・최봉홍・이에리사 의원 발의) ····· 36
10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배기운・전순옥・김성곤・최원식・윤관석・노웅래・안규백・강기정・이종걸・홍종학・조정식・정성호・심재권・김춘진 의원 발의) ····· 36

10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주영순・서용교・김상민・김기선・이완영・김한표・황주홍・김용태 의원 발의) ····· 36
10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10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정진후・노회찬・김선동・오병윤・박원석・김제남・이석기・김재연・김미희 의원 발의) ····· 36
1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박완주・신장용・백재현・박홍근・김우남・김춘진・김동철・이원욱・배기운・김태년・김영주 의원 발의) ····· 36
1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춘진・유대운・민홍철・전해철・김경협・안민석・우윤근・김기준・이낙연 의원 발의) ····· 37
10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박완주・신장용・백재현・박홍근・김우남・김춘진・김동철・이원욱・배기운・김태년・김영주 의원 발의) ····· 37
107.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전순옥・장하나・이인영・이만우・민홍철・김기준・한명숙・서영교・정성호・김승남・배기운・유대운・김경협・홍의락・김성곤・이윤석・이낙연・최민희・유성엽 의원 발의) ····· 37
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이춘석・유대운・최동익・김용익・한정애・이낙연・전정희・배기운・김재윤・서영교 의원 발의) ····· 37
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최동익・강창일・이진복・박수현・김영주・김관영・문희상・양승조・김우남 의원 발의) ····· 37
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李宰榮・손인춘・김정록・김현숙・박민식・김명연・강석훈・이현재・신의진・홍지만・윤영석・유승민・윤명희・이종훈・이에리사・신경림・류지영・안종범 의원 발의) ····· 37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윤후덕・김재윤・유성엽・박원석・서기호・최민희・심상정・박홍근・김경협・전정희・김우남・정진후・우원식・김춘진・이미경・노웅래 의원 발의) ····· 37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인재근・정성호・이인영・김현미・우원식・박완주・유은혜・백재현・최민희 의원 발의) ····· 37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김우남・이낙연・배재정・박원석・김태년・이미경・김경협・김승남・최규성・박영선・홍종학・이상직・박홍근・유대운・홍영표・진성준・김현미・김민기・은수미・인재근・유은혜・최원식・이만우・이목희・김재윤・김재원・우상호 의원 발의) ····· 37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문재인・최원식・정성호・김기식・김성주・최재성・진선미・홍종학・박영선・박완주・이춘석・김용익・한명숙・장하나・이인영・홍영표・남인순・김기준・김경협・한정애・이목희・김현미 의원 발의) ····· 37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강은희・손인춘・김정록・윤명희・김상민・민현주・이재균・주영순・박상은・신성범・송영근・이에리사 의원 발의) ····· 37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김선동・오병윤・이석기・김미희・김재연・정진후・김제남・金永柱・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688) ····· 37
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오병윤・김미희・김재연・김선동・박주선・정진후・인재근・이석현・이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3129) ····· 37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김성태・서용교・김한표・전하진・신성범・이완영・신경림・정문헌・주영순 의원 발의) ····· 37
1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김우남・서기호・은수미・안규백・

유기홍・박주선・주승용・안민석・김춘진 의원 발의) ····· 37
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안규백・이낙연・이상직・전병헌・이인영・전정희・홍종학・남인순・정성호 의원 발의) ····· 37
1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하나・박홍근・은수미・김경협・윤관석・이미경・우원식・이상규・남인순・유승희・한명숙・원혜영 의원 발의) ····· 37
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한명숙・안민석・장하나・조경태・김경협・심상정・노회찬・은수미・민병두・홍영표・김기준 의원 발의) ····· 37
1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배기운・최민희・홍종학・심재권・김태년・김광진・안민석・김동철・박주선・이춘석・김관영 의원 발의) ····· 37
1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주영순・서용교・김경협・추미애・이강후・김기선・김상민・정갑윤 의원 발의) ····· 38
12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김정록・이한성・김태원・이명수・이종진・박덕흠・김성찬・주영순・박성호 의원 발의) ····· 38
12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1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유성엽・배기운・김재윤・전순옥・윤관석・주승용・김재연・조정식・홍종학・강기정 의원 발의) ····· 38
1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만우・정희수・류지영・홍지만・김한표・김춘진・송영근・강은희・고희선 의원 발의) ····· 38
1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김정록・강길부・김태원・이명수・김성찬・권성동・이만우・박성호・김기선 의원 발의) ····· 38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이춘석・유대운・최동익・김용익・한정애・이낙연・전정희・배기운・김재윤・서영교 의원 발의) ····· 38
1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홍영표・강동원・유대운・문병호・김상희・박민수・김윤덕・김성곤・정희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0) ····· 38
1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우남・홍문표・김영록・이춘석・김윤덕・최규성・윤명희・강기정・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2874) ····· 38
1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민현주・홍지만・김정록・이재영・강은희・문대성・李宰榮・남경필・안종범・이에리사・민병주 의원 발의) ····· 38
1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李宰榮・손인춘・김정록・김현숙・박민식・김명연・강석훈・이현재・신의진・홍지만・윤영석・유승민・윤명희・이종훈・이에리사・신경림・류지영・안종범 의원 발의) ····· 38
1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이낙연・홍지만・이재영・이한성・김장실・박성호・전정희・박인숙・이에리사・김태원・길정우 의원 발의) ····· 38
1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오제세・김민기・최규성・홍의락・김현미・양승조・박남춘・최민희・김성주・김광진・김영록・안규백・이종걸・정성호・김우남・강기정・김관영・박영선・김춘진・원혜영・유기홍・배기운 의원 발의) ····· 38
1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김상희・김용익・배재정・서영교・유은혜・은수미・이미경・진선미・최동익・홍영표・홍종학・한명숙 의원 발의) ····· 38
1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하태경・전하진・문대성・김세연・김재경・김동완・김상민・이노근・이강후・여상규・신

경림・정갑윤 의원 발의) ····· 38
1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권성동・김진태・유일호・이상일・박인숙・박창식・김한표・류지영・이자스민 의원 발의) ····· 38
1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배기운・이찬열・최재성・전병헌・최원식・윤관석・이강후・민홍철・김재윤・서기호・유성엽・남인순 의원 발의) ····· 38
1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홍영표・이완영・주영순・서용교・김경협・최봉홍・김영주・이강후・정의화 의원 발의) ····· 38
14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만우・정희수・류지영・홍지만・김한표・김춘진・송영근・강은희・고희선 의원 발의) ····· 39
1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강은희・손인춘・김정록・윤명희・주영순・김상민・신성범・민현주・이재균・박상은・송영근・이에리사 의원 발의) ····· 39
1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만우・정희수・류지영・홍지만・김한표・김춘진・송영근・강은희・고희선 의원 발의) ····· 39
1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최봉홍・서용교・김상민・김성태・홍지만・이한성・김현숙・강석훈・박대동・이철우・김한표・김상훈・김광림 의원 발의) ····· 39
1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강동원・박남춘・박원석・유기홍・유성엽・이인영・인재근・최동익・최민희 의원 발의) ····· 39
1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강기정・김우남・남인순・배기운・이낙연・이인영・이학영・이춘석・정성호・홍종학 의원 발의) ····· 39
1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강기정・김경협・김동철・김상희・김성곤・김성주・김진표・김태년・김한길・남인순・노웅래・노회찬・도종환・박남춘・박주선・박홍근・배기운・배재정・백군기・백재현・부좌현・설훈・송호창・신기남・신장용・심상정・유기홍・윤호중・은수미・이미경・이석현・이인영・이종걸・이해찬・인재근・임내현・장하나・정호준・조정식・최동익・최민희・한정애・홍영표・홍종학 의원 발의) ····· 39
149. 미성년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이한성・이자스민・강기윤・김정록・정희수・서상기・유승우・정문헌・홍지만 의원 발의) ····· 39
150.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김성태・서용교・신성범・정병국・김학용・金永柱・김세연・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 ····· 39
15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李宰榮・김상민・원유철・김세연・민현주・이만우・이종훈・진영・이명수・권성동・윤상현・이주영・남경필・권은희 의원 발의) ····· 39
15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태년・전순옥・이완영・김태원・유대운・김민기・홍종학・배기운・김재윤 의원 발의) ····· 39
15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배기운・우원식・장병완・김관영・최규성・정호준・이미경・안민석・신경민・주승용・김광진 의원 발의) ····· 39
15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길정우・권성동・황진하・김장실・인재근・강은희・권은희・김상훈・함진규・강기윤 의원 발의) ····· 39
1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김기준・민홍철・배기운・안규백・유기홍・유성엽・윤관석・은수미・이원욱・인재근・전정희・한명숙・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 39
1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157. 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강은희・손인춘・김정록・윤명희・주영순・김상민・신성범・민현주・이재균・박상은・송영근・이에리사 의원 발의) ····· 39
1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문대성・李宰榮・홍일표・김세연・

김현숙・남경필・김태원・박성호・여상규・이에리사 의원 발의) ····· 39
1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박완주・신장용・백재현・박홍근・장병완・김우남・김춘진・이원욱・김현・배기운・김영주 의원 발의) ····· 39
1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김제남・노회찬・박원석・정진후・은수미・장하나・전순옥・이미경・강동원・한명숙・서기호 의원 발의) ····· 39
1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한정애・장하나・한명숙・김경협・은수미・심상정・홍영표・김우남・홍의락 의원 발의) ····· 40
1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하나・박홍근・은수미・김경협・윤관석・이미경・우원식・이상규・남인순・유승희・한명숙・원혜영 의원 발의) ····· 40
1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배기운・전정희・인재근・최민희・김춘진・홍종학・백재현・강기정・이춘석 의원 발의) ····· 40
1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
165.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우윤근・배기운・최민희・남인순・박민수・최원식・배재정・이상민・이명수・김경협・김윤덕・유성엽・박홍근・유대운・민홍철・안민석・문병호 의원 발의) ····· 40
16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김관영・조정식・정세균・강기정・박수현・신장용・전정희・황주홍・강동원・김윤덕 의원 발의) ····· 40
167.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임내현・장하나・김경협・은수미・한명숙・한정애・박수현・우원식・홍영표・김진표・이낙연・윤호중・김용익・심상정・신장용・김미희・강동원・김상희 의원 발의) ····· 40
16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강은희・박상은・손인춘・김정록・윤명희・주영순・김상민・민현주・이재균・신성범・송영근・박덕흠・이에리사 의원 발의) ····· 40
16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
17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영록・김승남・도종환・이종걸・박홍근・정청래・강기정・추미애・이용섭 의원 발의) ····· 40
17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배기운・김우남・이명수・이낙연・진성준・이상직・문병호・김태년・이인영・권은희・김태원・정성호・윤관석・홍종학・전순옥・김성곤・전정희・김미희・유대운・박남춘・전해철・이원욱・박혜자 의원 발의) ····· 40
17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정문헌・한기호・주호영・김정록・노철래・김세연・정갑윤・김성곤・이자스민 의원 발의) ····· 40
17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문정림・김성곤・배기운・남인순・유성엽・이상민・김승남・강기정・안홍준 의원 발의) ····· 40
17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
17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강기정・문병호・이언주・신경민・최민희・배기운・홍종학・김기식・박원석・강동원 의원 발의) ····· 40
17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재인 의원 대표발의)(문재인・이상민・도종환・홍영표・김현・김용익・윤후덕・임수경・배기운・최민희・배재정・유대운・서영교・김윤덕・진선미・민홍철・전해철 의원 발의) ····· 40
17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최민희・배기운・강동원・이춘석・전병헌・안민석・유은혜・정진후・전순옥 의원 발의) ····· 40
17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만우・신의진・김을동・김한표・정희수・조명철・홍문표・홍지만・김춘진・고희선 의원 발의) ····· 40
17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이상직・최규성・윤관석・김성곤・신경민・유성엽・안민석・우원식・임내현・도종환・강기정 의원 발의) ····· 40

1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손인춘・정갑윤・김상훈・정희수・여상규・김태흠・전하진・하태경・김기선・노철래 의원 발의) ····· 40
18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배기운・이미경・은수미・홍종학・김미희・박홍근・이낙연・신학용・김재연・정호준 의원 발의) ····· 40
182.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김한길・전병헌・한명숙・윤관석・최민희・김경협・신장용・김윤덕・추미애・진성준・신경민・민홍철・정성호・홍종학・김광진・전정희・유성엽・주승용・강기정・유대운・황주홍・김재윤・오제세・김성곤・유은혜・도종환・배재정・변재일・김영주・이인영・김영환・김동철・문병호・노웅래 의원 발의) ····· 41
183.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41
184.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41
18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41
186.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41
187.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41
188. 차별금지법안(김재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41
189. 차별금지법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41
190. 차별금지법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41
191.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41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협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홍영표 위원님이 보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최봉홍 위원님과 이종훈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상민 위원님과 주영순 위원님이 보임되었습니다.

개선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정 안건은 총 191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오전에 환경부 소관 81건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하고, 이어서 오후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110건 안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신계륜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45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제68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등 환경부 소관 2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01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한 의결이 필요합니다.

위 5건의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유대운・홍종학・민홍철・양승조・강기윤・이상민・김제남・배기운・이재영 의원 발의)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권성동・전하진・김영우・김상민・김세연・김용태・이완영・나성린・박상은・정의화・윤명희・이종훈・송광호・신성범・박민식 의원 발의)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유대운・민홍철・박성효・안민석・주승용・박병석・박범계・김현미・정진후 의원 발의)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경대수·김상민·김성태·민홍철·박성효·서용교·이종훈·주영순·최봉홍 의원 발의)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은수미·이에리사·정희수·정문헌·이철우·신동우·조명철·조원진·김상민·윤명희 의원 발의)

9.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홍지만·권은희·이종진·심학봉·윤재옥·최봉홍·주호영·김재원·성완종 의원 발의)

1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관영·노영민·박기춘·서영교·윤관석·은수미·진성준·장하나·홍영표 의원 발의)

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金永柱·이만우·김정록·이에리사·박창식·이우현·박인숙·이재영·최동익·신성범 의원 발의)

1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유인태·원혜영·홍의락·정세균·김관영·이춘석·백재현·김광진·김태년·김성주·김재윤·심재권·홍종학·한명숙·김세연 의원 발의)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은수미·장하나·배재정·신기남·한정애·우원식·이낙연·이윤석·심상정 의원 발의)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대동·정희수·홍영표·이재영·이만우·김을동·김정록·여상규·심학봉·서용교·윤명희·문대성·강은희·송영근 의원 발의)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장하나·박수현·우원식·이낙연·이윤석·전순옥·김상희·강동원·강창일 의원 발의)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미경·배기운·전병헌·박홍근·민홍철·김성곤·강동원·유성엽·홍종학 의원 발의)

2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강동원·김광진·김미희·김승남·김영주·김태년·박인숙·배기운·신경민·유대운·유성엽·은수미·전정희·정성호·최동익·홍종학 의원 발의)

21.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김경협·김광진·김태원·남인순·박원석·배기운·심상정·은수미·전순옥·정성호·정진후·한명숙·한정애·홍영표·홍종학 의원 발의)

22. **생태계위해 외래생물관리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이한성·강은희·성완종·김태원·김장실·최경환·이윤석·유승민·송영근·강석호·김성찬·김재원·서용교·유성엽·박인숙·장윤석 의원 발의)

2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제남·김미희·신장용·우윤근·배기운·김우남·홍종학·문병호·강동원·김성곤·전정희 의원 발의)

2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 의원 대표발의)(이종진·유승민·서상기·황진하·노철래·이완영·윤재옥·경대수·유승우·이채익·李宰榮·민현주·홍지만 의원 발의)

2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유성엽·김광진·李宰榮·강동원·문병호·전순옥·이낙연·김성곤·김동철·배기운·홍종학·김춘진·민홍철·윤관석·유은혜 의원 발의)

2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李宰榮·이노근·이이재·안효대·김태흠·강석호·이종진·이헌승 의원 발의)

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정희수·강기윤·김태환·신성범·윤명희·김세연·김을동·정문헌·문대성·이상일·송영근·민현주·박대출·주영순 의원 발의)

2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유승우·주영순·황영철·김상훈·서용교·이낙연·신성범·김경협 의원 발의)

2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만우·정희수·류지영·홍지만·김한표·김춘진·송영근·강은희·고희선 의원 발의)

3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최봉홍·김성주·신경민·한정애·장하나·홍종학·홍영표·김용익·김성곤 의원 발의)

35.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정희수·홍문표·김우남·이자스민·민병주·이채익·강은희·이상일·김영록·김을동·고희선 의원 발의)

3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신성범·이장우·윤재옥·김장실·박대출·유정복·조원진·류성걸·안홍준 의원 발의)

3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한정애·전순옥·배기운·박수현·박홍근·홍영표·김우남·인재근·윤관석·홍종학·정진후·전정희 의원 발의)

3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배재정·은수미·이목희·임수경·진성준·홍영표·홍희락·한명숙 의원 발의)

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은수미·박수현·우원식·장하나·박남춘·진성준·전병헌·안규백·이석현 의원 발의)

4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관영·김영주·노영민·배재정·심상정·우원식·은수미·장하나·전순옥·홍영표·한명숙 의원 발의)

4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박남춘·이찬열·장병완·이원욱·김현미·강기정·김우남·윤호중·박주선·김관영·조정식·원혜영·김진표 의원 발의)

4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이강후·정희수·이만우·강은희·김태원·최봉홍·이종진·김상민·서용교·박대동 의원 발의)

4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변재일·심상정·우원식·은수미·이완영·장하나·전순옥·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

4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우남·최규성·양승조·강기정·정성호·최동익·조정식·김성주·심재권 의원 발의)

4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정문헌·김정록·박성호·안홍준·정희수·김재원·김기선·황영철·염동열·권성동·한기호 의원 발의)

4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문정림·유기준·정성호·신경림·이에리사·이현재·서상기·이명수·김태호 의원 발의)

4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박주선·김우남·이상민·안민석·정세균·유성엽·김승남·김성곤·김관영 의원 발의)

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최봉홍·김성주·신경민·한정애·장하나·홍종학·홍영표·김용익·김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3)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홍영표·김기준·임내현·김경협·심상정·전순옥·장하나·최봉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2759)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김현숙·홍지만·박민식·유기준·김정록·전하진·이만우·정갑윤·황영철·이채익 의원 발의)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李宰榮·최봉홍·이채익·박대출·이만우·이한성·송영근·조원진·박성호·이헌승·박인숙·강석훈·김회선·류지영·이에리사 의원 발의)

5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염동열·한기호·서용교·서영교·金永柱·민병주·서상기·정갑윤·박성호·김한표·최봉홍·강은희·정호준·이에리사 의원 발의)

5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서기호·최동익·윤관석·전정희·이상직·최민희·조경태·유성엽·은수미·장하나·정성호 의원 발의)

5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안민석·양승조·우윤근·신장용·장병완·조정식·이상민·이미경·박완주 의원 발의)

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李宰榮·최봉홍·김기현·이채익·박대출·이만우·김광진·이한성·조원진·박성호·심재철·이헌승·박인숙·강석훈·김회선·이자스민·이에리사·조명철 의원 발의)

5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최봉홍·김성주·신경민·한정애·장하나·홍종학·홍영표·김용익·김성곤 의원 발의)

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李宰榮·최봉홍·이채익·박대출·이만우·이한성·송영근·조원진·박성호·이헌승·박인숙·강석훈·류지영·이에리사 의원 발의)

6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정문헌·고희선·정희수·김태원·이명수·신성범·윤재옥·이노근·박인숙·김춘진·전정희 의원 발의)

6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李宰榮·유승우·유승민·성완종·하태경·손인춘·이노근·이종진·김태흠·이이재 의원 발의)

6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동원·김경협·김제남·서기호·박원석·장하나·정진후·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6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7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장하나·홍종학·최봉홍·김기식·최동익·김용익·김성곤·김제남·신경민·진선미 의원 발의)

7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대표발의)(노철래·손인춘·권성동·이재영·염동열·이우현·김세연·홍문표·김정록·김태원·민현주·주영순·정수성·이강후·박인숙·이종진 의원 발의)

7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배기운·김우남·홍익표·이명수·이낙연·진성준·이상직·김태년·김태원·남인순·장하나·정성호·유기홍·윤관석·홍종학·안민석·김성곤·전정희·유대운·박남춘·전해철·이원욱·민홍철·박혜자 의원 발의)

7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김관영·남인순·문희상·박홍근·배기운·신기남·신장용·우윤근·유대운·윤호중·홍종학 의원 발의)

7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동철·이상민·유대운·오제세·홍종학·유성엽·김영록·최규성·김재윤 의원 발의)

7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박성호·강기윤·이우현·이노근·강길부·서용교·김성태·최봉홍·주영순·강은희 의원 발의)

77. 환경부, 환경공단, 충주시의 충주시 소각장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 불법 조작 감시 부실에 대한 감사요구안(장하나・김광진・김우남・박수현・박원석・심상정・유성엽・은수미・이낙연・이언주・인재근・정진후・홍종학 의원 발의)

78. 보령공군사격장 인근 환경피해 조사 및 보령 앞바다 환경정화 긴급요청에 관한 청원(손인춘 의원의 소개로 제출)

79.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0. 물관리 기본법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1항까지 76건의 법률안, 감사요구안 1건, 청원 1건 및 의견 제시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봉홍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제16항, 제27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의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최봉홍 의원 예.

○위원장 신계륜 서면으로 대체하신다고 합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 경기도 고양 덕양갑 심상정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과 우리 환경노동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의미 있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화학물질의 안전이 화학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작업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 사용에 있어서 소비자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국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지속적인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화학물질 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소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이 화학물질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해서 사전 예방의 원칙, 원인제공자 책임의 원칙하에 화학물질의 위험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노출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와 하위사용자 간의 화학물질 위험 정보교환입니다. 화학물질 위험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화학물질 관리는 형식적인 관리로 머물게 됩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이용은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평가를 전제로 합니다. 화학물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정보를 가장 잘 많이 알고 이득을 보게 되는 제조자와 수입자에 의해서 화학물질의 독성평가의 정보가 생산되어야 합니다. 원인제공자 책임의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대상 기준을 연간 0.5t으로 하였습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해성 심사제도의 기준은 연간 0.1t보다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0.5t에서 1t 사이에만 존재하는 유독물, 발암물질 등 핵심 유해물질이 40여 종이 존재합니다.

한국형 REACH의 성격으로서 화학물질 등록 대상 기준을 0.5t으로 제안한 이유입니다. 0.5t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을 등록하게 되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80%가 관리 범위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화평법이 제정되면 가장 많은 비용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경우에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유럽연합에서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연간 10t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유럽으로 화학물질과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 유럽의 화학물질관리청의 기준을 단 한 번도 위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화학물질 규제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이 수준에서 우리나라도 유해성 평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산업

계의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유럽에 비해서 경제규모가 17배나 적은 한국경제 규모에서 위해성 평가 대상은 10t 이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에서 발생된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REACH와 유사하게 제품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들도 화학물질 등록을 하게 하였습니다. 제품의 제조·수입자도 제품 내 연간 1t 이상, 그리고 둘째 사용조건이 의도적 배출일 경우,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때 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화평법이 3년간 산업계와 산업자원부 등의 반발로 정부의 화평법이 후퇴하였고 화평법 제정이 무산되었었습니다. 3년 사이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과정에서 노동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화학물질의 위험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과 위해성 평가, 그리고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 등 지정 등의 내용을 통해서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를 마련하고자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법률 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드린 이 법률안이 정부의 화평법을 보완·대체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1항, 제17항, 제29항, 제30항, 제31항, 제33항, 제37항, 제40항, 제54항, 제59항, 제60항, 제63항, 제65항, 제67항, 제69항, 제70항 등 2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법률안 심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개의 제·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제조량, 용도 등을 보고토록 하고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는 유해성 및 위해성 자료 등을 제출하여 등록토록 하였으며, 유해성심사와 유해성평가를 위해 유해성이 큰 물질은 유독물로 지정하고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화학물질의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검토기준을 명시하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 시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로 완화하였습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시나리오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하고 기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기상 '예보업', '감정업', '컨설팅업'을 '기상예보컨설팅업'으로 통합하고 기상정보를 기업경영에 적정하게 활용 시 부여하는 날씨경영인증제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오염물질별 대기오염도를 예측하여 공개토록 하고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작차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기관의 업무정지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고자 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상 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동측정 차량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량규제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대한 각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수도 기본

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물 절약 전문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대강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포함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체 상태에 한정된 악취의 정의를 확대하여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는 것을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과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폐냉매에 대한 회수·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고물상 등 소규모·영세 사업자에 대한 영업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토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입폐기물의 양도·양수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해 산업단지나 관광지 이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강우 시 급증한 하수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현재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정화조 등 개인하수도를 전문관리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에 공동주택 유사시설을 추가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협의매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체납 시 가산금을 5%에서 3%로 낮추었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기에 앞서 새로 보직을 맡게 된 환경부와 기상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백규석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조주영 기상청 차장입니다.

홍정기 대변인입니다.

오정극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김상배 상하수도정책관입니다.

이찬희 자연보전국장입니다.

박광석 자원순환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55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의원님들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 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57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한공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제76항까지 76건의 법률안과 제77항 감사요구안, 제78항 청원 그리고 제79항~제81항까지 3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76건과 감사요구안, 청원 및 관련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건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성태 의원안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기존에도 입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입지 제한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규제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부안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범위 및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업체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고 국유재산의 무상양여와 법인세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국립생태원을 당초 국가기관으로 추진하려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건의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은 현재 등록대상인 기상장비시스템업을 신고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업체에 대한 벌칙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3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은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위하여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의 일반자동차 정기검사에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 법체계를 조정하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전문기관 외에 지정정비사업자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사육곰의 증식을 금지하고 국가가 사육곰을 매수하여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육곰의 증식금지 조치보상금, 매수비용, 매수된 사육곰의 관리비용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재정당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건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성태 의원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주택의 구조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최봉홍 의원안은 소음 발생 건설기계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제조·수입의 금지와 같은 제재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의 층간소음을 생활소음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 측정 및 피해유무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성호 의원안 중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 요청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2건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학재 의원안은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의 요건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배출부과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과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한정애 의원안은 동물원과 식물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나 산림청에서 식물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4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순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와 통보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홍영표 의원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그 시행시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개선명령을 먼저 한 후 취급시설의 폐쇄·이전 등의 명령을 하는 단계적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민석 의원안은 화학물질사고의 미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심사하여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벌칙과 과징금 등이 상향되기 때문에 의무와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건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배기운 의원안은 자연공원 중 지정 장소 밖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음주 금지지역을 합리

적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정문헌 의원안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은수미 의원안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국가가 지원해야 할 대상에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외에 관련 기관과 단체를 추가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과 단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서병수 의원안은 1회용품 생산업체 대다수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규제로 경영상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서용교 의원안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사업이행과 관련한 위반 발생 시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징계와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정부가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전기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5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연 의원안은 대규모 점포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대책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실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전순옥 의원안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100ℓ에서 75ℓ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생활의 효율성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재일 의원안은 산업단지 등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도 영업구역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서용교 의원안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제조업의 등록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관리주체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나 지자체의 자체평가만이 규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변구역 내 설치제한 대상에 오피스텔 등 일부 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수변구역 내에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며, 토지 매수 및 수용과 관련해서는 투입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 2건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중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등록대상이 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 물질의 범위와 위해성평가의 대상 범위를 비롯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의 관계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안은 등록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범위와 제출자료를 확대하는 등 정부안과 비교하여 강한 규제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와 벌칙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에 비영리법인인 한국환경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질문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수미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 질의 동안에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은수미 위원님 질의 및 대체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겁니다.

현재 개정안의 경우는 어쨌든 기존의 악취방지법에 비해서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요.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악취방지법의 검토보고서를 봐도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신고대상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어쨌든 허용 기준보다 초과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고대상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장관님도 아시고 계시는 것인데, 현재 개정안 그러니까 정부안이라기보다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님 안에 따르면 이러한 사용중지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그 밖의 조치들에 대한 강화를 하는 건데, 이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실제로 지금도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된다는, 현행법조차도 이행이 안 된다라는 점 하나, 그래서 이것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사실 사용중지 명령 자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역효과,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그러니까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면 이것은 또한 굉장히 주관적이거나 자의적 판단이, 그러니까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는 현행법조차도 지자체장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현재 있고요, 또 만약 개정안대로 된다면 지자체가 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혹은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과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우려까지도 고려하셔서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악취는 이게 모든 사람이 악취로 느끼는 그런 악취도 있고 또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이런 아주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적인 난점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장에서는 지도 단속하고 또 영업정지나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효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사용중지가 아니라 폐쇄를 하는 경우에도 폐쇄의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이 참 난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 감각적으로 악취를 감지하는 관능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 외에도 측정에 의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개발을 해 나가야 현장에서 이게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악취를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업계와 또 우리 과거에는 어떤가, 이런 기술 연구 주체들로 하여금 그것을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능법은 사실 현장에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을 폐쇄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도할 수 있는 측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환경부 대책은 우선 객관적인 측정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기술을 개발하는……

○은수미 위원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사실은 시도 장의 자의 혹은 주민들이 어떤 경우는 더 느끼고 덜 느끼고 하는 이런 자의적인 부분은 좀 없애 나가는 것이 기본이다, 우선은 그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은수미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그것을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그런 측정기준을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것은 좀 중장기적 문제일 텐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이것을 해소할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없겠다, 아직은 없다라는 대답으로 이해를……

○환경부장관 윤성규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우심한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 시도가 안 했을 때에는 저희가 4대강 유역청별로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 단속반을 투입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우심한 케이스는 단속반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다음에, 일반적인 쓰레기 처리장이나 이런 것이야 이제 악취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음식점이라든가 세탁소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악취 민원이 나는, 생활 악취 유발시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은 현재 환경부에는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그 부분도 2005년부터, 예를 들면 연간 한 200군데 정도 악취 물질을 채취해 가지고 기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감해 오도록.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악취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간이 다 지났는데 다음에 한 번만 더 질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이완영 위원 질의합니다.

○이완영 위원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국환경한림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한림원, 공학한림원, 2개만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완영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민간기관으로 한국환경한림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완영 위원 이렇게 해서 새 정부의 위상과…… 이제 장관님께서 환경복지 차원에서 환경의 위상, 국민에 대한 환경복지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런 단체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공학한림원에 환경 부문을 다루는 분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제 위원은, 회원은 한 7~8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7~8명 가지고 우리나라 환경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환경한림원을, 지금은 여러 가지 기반이 미약하지만 법적 조직으로 출범시켜서 계속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환경복지라든가 환경문제를 그런 현자들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예.

지금 최근에 계속 기업의 환경사고, 특히 화학물질 또 우리가 수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이 3만 불, 4만 불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문제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완영 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예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 환경에 대한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위원 질의합니다.

○한명숙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그 핵심내용이 사회기반시설사업과 개발사업, 건축물과 관련한 인허가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연경관심의나 전략영향평가 또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영향평가 등의 환경성 평가와 전적으로 중복된다고 봅니다만 특히 경관심의제의 대상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과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나 철도나 도시철도, 하천, 사회기반시설 이런 경우에 전략영향평가에서 도시개발 도로, 철도, 하천 등 101개 분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개발사업 건축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중복되는데 경관심의를 그냥 국토교통부에 넘겨주는 꼴이 돼 버렸는데 이것은 장관님이 오시기 전에 MB정부 시절 전 장관님 시절에 환경부가 제 역할을 잘 못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할 때에 생긴 일종의 불상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부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국회에서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입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그 평가 과정에서 경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는 한편 그런 대

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측에 경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지역에도 경관을 또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환경부에서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다가 적절히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한명숙 위원 취지를 알겠습니다만 친수구역특별법도 그동안 지켜오던 것을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거의 그냥 넘겨준 꼴이 됐는데 이번에 경관법 전부개정안에도 보면 유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환경부에서 해 준 내용은 '가급적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부가 이렇게 협의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최종안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관위원회의—이것은 국토부지요—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통과되면 장관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고 싶어도 실제로 국토부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법안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해서 소신껏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자기 스스로의 역할을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에서라도 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우선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도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환경성평가제도와 국토부의 경관 심의의 검토 시기가 다르더라도 심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상당히 큰 혼란만 발생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를 때는 사업자한테 상당한 혼동과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환경성평가제도의 대상 사업이 아니라면 국토부가 경관 심의를 해도 무관하다는 의견을 환경부가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토부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 환경부가 경관 검토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영향평가 시에 도시 이미지나 경관도 포함해서 검토한 사례가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번 기회에 살펴보고 관련 제도도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회와 환경부가 좀 협의를 해서요, 이것을 그냥 국토교통부에다가 환경부의 권한을 그냥 고스란히 또 넘겨주는 법안을 지난 정권에서 했던 그대로 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 장관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정부가 화평법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안을 안 내려고 했는데, 2011년 환경부에서 낸 안보다도 산업계와 산업자원부에서 너무 많이 후퇴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루가 멀다하고 지금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사고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심상정 위원 이런 정세와 또 앞으로도 산업단지 노후화와 맞물리면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훨씬 더 증폭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 정부가 제출하신 화평법은 너무 많이 후퇴됐다 그 점을 지적드리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그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원래 의지를 가졌던 안 중에서 산자부에 의해서 지나치게 후퇴된 이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완하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안을 냈습니다.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되려면 화학물질 노출 시나리오 작성, 그러니까 위험정보 교환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화평법의 적용 범위에 화학물질을 어디까지로 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위험정보 교환에서 처음에 환경부가 낸 법안에는 하위사용자가 포함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됐잖아요, 가습기

살균제에 문제가 되었던 PGH라는 화학물질은 독성이 약해서 바닥재 청소제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화학물질이 호흡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사용자인, 말하자면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게 그런 용도, 말하자면 이게 호흡기에 관련되는 용도에 맞는 그런 독성 평가,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지적하는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저렇게 크게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방향제라든지 탈취제라든지 지금 많은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기왕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됐으면 그런 문제 제기까지가 포함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하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묻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빛좋은 개살구' 될 수도 있습니다. 일체의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는 화평법이 될 수도 있다, 그 점을 지적드리고.

두 번째는 범위 부분인데요, 지금 유럽의 REACH하고 제가 낸 것은 등록은 0.5t이고 유해성 평가는 10t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등록을 1t으로 하고 유해성 평가를 100t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0.5t과 1t 사이, 그다음에 10t과 100t 사이에 유해물질이 도대체,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느냐 이 자료를 공개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장관께 부탁드릴 것은 뭐냐 하면 2011년 6월 달에 화평법 입법예고안을 환경부가 할 때 제출했던 자료는 '0.5t과 1t 사이에 유해물질만 40종이다, 유독물 22종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경부 안으로 하면 유해물질 40종은 날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고를 그때 환경부에서 설명을 했는데 2013년 4월 5일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0.5t과 1t 사이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이 7개밖에 없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이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0.5t으로 환경부가 법안을 낼 때는 '0.5t과 1t사이에 40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t으로 지금 후퇴한 상태에서는 '7종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보가 있어야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환노위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10t하고 100t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위험물질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부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345종 화학물질에서 도대체 몇 종이 유독물이냐, 몇 종이 발암물질이냐 이것을…… 내일 우리가 화평법 공청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물질별 등록 비용이나 위해성 비용까지를 포함해서 화학물질 이름, 독성 여부, 사용량, 기업체 수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답을 요청드리겠는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산업계에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하는 게 고려사항입니다. 그것은 저도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 산업연구원하고 환경부하고 비용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난다는 말이에요. 산업연구원의 자료가 너무나 뻥튀기가 됐어요. 객관적으로 뻥튀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환경부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해성 평가 10t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그것 다 지킵니다. 다른 나라에는 다 지키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험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는 논리,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숨값이 유럽 국민들의 목숨값보다 더 싸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이 하위사용자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부분은 현재 정부안에는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가습기 살균제 등 사례에서와 같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0.5~1t 사이에 2011년도에는 40종이고 2013년도에는 7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개별 업체냐 전체냐 이런 차이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상정 위원 아니, 오늘 뭐 바쁘니까 자료로, 내일 어차피 화평법 토론회의 쟁점이 되려면 유해물질이 이 구간에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좀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해서 다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가능한 최대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산업연구원 쪽이 좀 과장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조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비록 양이 적다 하더라도 그 등록 대상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95종을 자료제출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일응 유해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제출하게 하면 정부가 감당이 안 될 것이고 완급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급을 가려서 하는 현재의 정부안도 나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합니다.

○한정애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산림청에서 반대가 아주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원하고 이런 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정애 위원 환경부에서 그동안 산림청하고 이것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논의는 해 왔지만 사실 그 식물원에 대한 부분, 식물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쪽에서 저희들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긴 합니다마는 법안소위 전까지 환경부에서 산림청하고 의견을 좀 조율을 하셔서 대체안을 제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 서용교 위원 질의합니다.

○서용교 위원 부산 남구을 서용교 위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내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 국토부하고 한번 좀 상의는 해 보셨습니까?

국토부에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기검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서용교 위원 거기에 이륜자동차를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좀 해 보셨는지?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은 그 법에 따라 달라는 희망이 있고요. 그쪽은 이제 좀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시간을 두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는 2017년도에 가서 이 제도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인데 저희는 그렇게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 부분은 좀 먼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어쨌든 추후에는 서로 유기적으로, 또는 하나의 법에서 묶어 내야 되겠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하나의 법은 아니고 민원인이 한 번은 오염배출 때문에 가고, 한 번은 자동차 안전 때문에 가고 이렇게 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양쪽 법이 일치되는 게 좋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이륜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었던데 전국적으로 한 183만 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용 현황들 이런 것들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사실 그 통계가 숫자만 있지 이용실태까지 자세하게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 통제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자동차와 비슷하게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였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륜자동차의 대부분은 각종 배달용이거나 그다음에 학생들 가까운 거리의 통학용이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서용교 위원 이륜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취미활동을 하는 외에는 대부분 다 생업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대부분 다 저소득층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주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과태료와 벌금이 적정한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기검사 업무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교통공단으로 한정을 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서용교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공단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개소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 산간벽지나 또는 생업에 대부분 다 이용되는 이륜자동차가 그 검사를 받으러 각종 전국에 몇 개 있지도 않은 교통공단을 다니게 됩니다. 되게 불편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륜자동차의 가격대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중고를 빼고라도 신제품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통계가 필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다니다가 보면 보이는 이륜자동차의 대다수는 조그마한 시중에서는 '스쿠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이하에도 할인을 적정하게 받으면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과태료나 벌금을 내고 운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격을 가지고 그 먼 거리에 불편한 검사를 받으러 다니겠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2017년까지 기다리지 못해 가지고, 환경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의지를 가진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 불편을 너무 많이 유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도 교통공단에 한정하기보다는 지금 자동차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 전문 업소를 비롯해서 몇 가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500개에서 2000개 사이 정도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만 당장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 문제, 소득의 문제라든지 생활의 편의성의 문제라든지 이게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 법은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오고 상당히 노력을, 공을 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하게 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법률안 제출이 되었지만 이 제출된 법안들을 꼼꼼히 한번 다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님, 이륜자동차는 대부분 2기통입니다. 그래서 윤활유가 연료하고 같이 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산화탄소(CO)나 또는 탄화수소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아서 전체 대기배출량의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지 않고는 뒷골목의 대기질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해 주시면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지만 1회의 경우에는 주의조치 한다든지 또는 2회의 경우에는 한 10만 원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질 부담이 아주 저감되게끔 하위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검사 관련해서는 교통공단이 전국에 한 118개소가 있는데 비교적 그래도 1개 시·군에 하나씩 정도는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118개면. 그렇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정비 전문업체들이 갖추어 나가는 경우에는 그러한 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해 나가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 질의합니다.

○홍영표 위원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국토해양위원회에 물관리 기본법이 제출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우리 환노위로 물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이 물관리 기본법은 일단 물관리의 체계를 일원화하자는 것인데, 우선은 지금 환경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으셨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수석실을 통해서 의견을 좀 내놓았습니다.

○홍영표 위원 '수리권의 체계와 물분쟁 조정 원칙이 중요하다' 그런 의견을 내놓으신 것으로 압니다.

사실은 저희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수량 확보 이런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4대강이 지금 한 8억 t 정도 그렇게 새로 수량을 확보한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홍영표 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인근의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저수지 둑의 높이를 높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한 2억 5000만t 정도를 확보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홍영표 위원 사실은 지금 4대강에 확보된 물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한 2억 5000만t, 토털 한 10억 5000만t이 실제로 어디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기본적으로 농업용 저수지는 우선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데 저수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겠지만 또 하나는 18대 때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라든지, 96개에 달하는 새로운 저수지의 개선과 신축을 통해서 그것을 추진할 때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용도로도 분명히 그렇게 타당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홍영표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물관리 기본법을 보면 이렇게 확보·공급 중심의 물관리 체계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녹조 문제를 통해서 4대강 유역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실제로 많은 피해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질이나 수생태 관리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게 제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홍영표 위원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리권을 해당기관에 그대로 보장하면서 수질·수생태계에 대한 이런 중요성들은 간과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도 환경부 의견대로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도 동감입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물관리 기본법이 사실은 일원화한다는 관리의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렇게 법의 목적이나 용어의 정의 이런 것에 있어서 수질과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물관리 기본 이념 이것이 반드시 반영되지 않으면 이 법안은 그간의 잘못된 물관리, 확보·공급 중심의 이런 물관리 체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개발론자들의 그런 법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는 물론이고 우리 환경부에서도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이것은 반대의견을 밝히고, 저는 수질과 수생태계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 법이 지금 국토해양위에 의원입법으로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외양상으로 보면 상당히 중립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개발 주체들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잡아져야 입법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이 2006년 10월에 정부입법안으로 되어 있었는데—이 법안과 동일합니다—그런데 이 법안은 17대, 18대 때 자동폐기 됐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래서 사실은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저희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물관리 기본법에 대한 철학이나

이넘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4대강에서 수량을 8억t 확보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과잉 중복투자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수량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녹조를 비롯한 수질과 수생태계를 제대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대강 사업 이후로 변화된 물환경, 이런 어떤 환경을 반영해서 이 법안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의견을 같이합니다.

○홍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에 김성태 위원 질의합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환경부 소관 법률이 55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제정된 법률이 5개거든요. 내일도 환경부 소관 제정법률안이 2건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내일 또 소위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정책의 전환이라든지 또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한 법의 제정은 괜찮지만 기존 법률의 개정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문제임에도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2010년도에 제정한 석면피해구제법 알고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석면피해구제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다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한 것은 법률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률은 문장 한 줄 한 줄마다 수많은 국민들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성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처에서도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또 제가 한 두 가지 언급할 부분은, 지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여하자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렇지요, 한정애 의원안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성태 위원 저는 요 근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나 감독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고 또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비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해화학물질을 이렇게, 지금 삼성 불산 누출사고라든지 여러 사고 현장에서도 보면 항상 도급이 문제거든요.

삼성전자의 화성사업장 같은 경우도 생산공정 내 유독물질 공정관리를 98년까지는 삼성전자 유지보수팀이 직접 했어요. 그다음에 하도급업체에 하청을 줘 가지고 했는데 하도급, 하청 관계는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청업체들이 원체 그렇게 적나라하게 제안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부품들이 제때 교체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고 또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원천적으로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게 가능하다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대사회라는 게 분업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경우에도 원청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청을 주더라도 원청자가 안전관리를 잘할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지관리 또는 부품·장비 교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을 것이고, 또 작업자들이 생산중단 기간을 너무 짧게 주다 보니까 철야작업 하는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청자한테 모든 책임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김성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하나 위원도 질의를 하십니까?

○장하나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연장자 순서로 주영순 위원께서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朱永順 委員 장관님, 방금 김성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잊을 만하면 화학물질 사고가 자꾸 터집니다. 특히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에서 경기도 사업장에 이어서 이번에 또 울산 삼성정밀화학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관리가 허술한데 중소기업들은 참 힘드시겠지요?

오늘 상임위에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여러 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사고신고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사고신고 지연으로 취급자에게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게 시한을 주어져 놓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뒤늦게 신고를 해도 그게 자발적인 신고냐, 이런 법적으로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기업들은 기업이미지 하락 등을 우려해 신고를 의도적으로 많이 기피하고 지연하고 있지만 법률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이런 조항들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에도 명시해 놨지만 취급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게 입법을 하는 한편 실제로 신고자가 신고를 했을 때 신고 받은 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까지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신고가 너무 복잡하다 보면 신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신고하는 방법, 이것도 아울러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제시해야만 그 신고가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신고할 때 양쪽이 아주 효과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朱永順 委員 화학사고 발생 시는 즉시, 말씀하신 대로 지체 않고 신고해서 더 이상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절차를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은 국립생태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생태원 시설 중에 에코리움이 있는데 기후대별 전시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5개 기후대별로 있습니다.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 이렇게 5개 기후별로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기본계획 수립 2단계 연구보고서를 보면 온대관은 한반도 생태계를 축소하여 한반도의 사계절 변화에 대한 생물 적응을 전시하는 것을 조성 목표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런데 전시된 내용이나 식물 구성을 보면 한반도를 보여 주는 것보다는 제주도 일부를 보여 주는 것 같은, 물론 제주도도 한반도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국립생태원법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접근성과 전시콘텐츠 부분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영남지역에서 가기에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법 통과 후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생태계를 이용하고 또 관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온대관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를 온대관에 넣어 놓은 것은 육지는 그냥 야생으로 해도 살 수가 있는데 제주 식생을 갖다 야생으로 하면 그 지역에서는 살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나대지 지역에다 조성을 해 놨는데 앞으로 전시온실 내에도 나머지 육지의 식생을 넣는 방법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KTX 역사와 생태원 간에 셔틀버스를 한 4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바로 인근에 장항선 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차를 증편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에는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상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면 어린이 생활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재료, 바닥재,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같은 공간의 실내 공기 질의 관리는 거부한다면 아이들 키우는 부모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 때 키즈카페의 관리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내 공기 질 관리대상에 실내 놀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때 답변하고 좀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관리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입니다. 장관님께서 관리의 필요성을 그 당시에 언급하셨던 만큼 반드시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상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말씀을……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 올렸고요. 또 이게 실질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집어넣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어린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 최봉홍 위원 질의합니다.

○최봉홍 위원 새누리당의 최봉홍 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가 이 법대로 된다면 제조업체는 생산 원재료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중간 처리업자가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경우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고 서로 충돌사항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 정부안은, 폐아스콘은 오래 전부터 중간처리 업자가 재활용까지 같이 해 왔습니다.

○최봉홍 위원 맞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걸 또 실제로 분리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 왔고 그 부분이 큰 무리 없이 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양 업자 간에 서로 충돌이 안 되도록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담당자로 하여금 입법소위가 열릴 때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계위해 외래생물관리법안이 주호영 의원으로 발의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2012년 2월에 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강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수목 관리 문제, 세관이 하고 있는 수입화물 관리규정,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우리나라 농축산의 대개는 수입한 곳에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항상 화주 중심으로, 수입업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종진 의원하고 이낙연 의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60억 예산 책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166억 했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은 전액 내지 50%를 부담해 달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가능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우리나라 개별법에서 국고의 지원율을 그렇게 명시적으로 해 놓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재정운용의 어떤 유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입법 체계와도 안 맞고 또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재정부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그 율을 정해 놓는다고 해서 그 율이 지켜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77명의 의원이 법안을 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환경부에서 재정상, 정부 여건상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보통 법안을 만들 때 법제처하고 해당 부처에 협의를 합니다만 그 부에서 안 나온다면, 반대해 가지고 불가능하다 하면 이런 법안이 아예 발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다음 거듭되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유해위험물 관리법이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그다음에 화평법 해 가지고 68번, 69번, 이렇게 지금 7개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럽에서는 우리가 모델로 하고 있는 REACH나 그런 걸 애기하지만 EU제국에서는 그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바꾼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내기보다도 차라리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정부 의견을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법이 REACH를 상대로 해 가지고 도입을 했다 할 경우에 다시 또 개정해야 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단은 시내와 격리가 되어 있고 내구연도가 전부 결정이 되어 가지고 30년이 넘어가면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사고가 안 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엄밀하게 공장을 시설할 때부터 파이프면 파이프, 탱크면 탱크, 내구연한을 정해 가지고 공장 시설을 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 화학공장은 거의 다 옛날부터 만들 때 특혜기업으로 성장을 해 왔던 회사들입니다. 그저 큰 회사라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휘둘리기보다도 원칙에 맞추어 가지고 강력한 의견을 좀 내셔서 산자부와 같이 협의하고 정부도 협의해서 교체되지 않은 그런 공장이 있을 때는 문 닫아야지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사고는 항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산단이나 울산산단에 유해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은 전면적으로 먼저 내구연도부터 봐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안전점검에 있어서도 현재로 봐 가지고는 사고가 났을 때 직전에 안전점검을 한 회사가 전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전검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민영화, 규제 완화가 되어 가지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친면으로 망치 가지고 파이프 통통 두드려 보고 '끝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끝냅니다. 이게 안전점검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기보다도 오히려 정부 의견으로 내놓고 확실하게 고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지적 말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내구연도 부분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장외홈런이 있듯이 장외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을 선진국형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시설에서 어떤 결함이 있어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을 원천 예방하자는 그런 제도인데, 이 부분을 하면 아마 내구연수 설정 효과하고 똑같이 효과가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도 작업자의 판단 착오, 오판에 의해서 나는 사고라든가 또는 피곤하다 보니까 주의력이 산만해 가지고 나는 사고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봉홍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세관 규정은 내구연한 넘으면 무조건 폐쇄입니다. 지금 세관 규정은 그렇게 돼 가지고 위험물 보관창고들은 장치장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내구연한 넘으면 폐쇄조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 질의합니다.

○장하나 위원 민주통합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저도 화평법 제정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기존의 유해법에서 어떤 유해성 심사, 유해성 평가 등 강화하는 내용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를 보니 일부 고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강화된 내용들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물질이라고 유해법이 시행하기 전

부터 있었던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유해성 심사를 진작에 의무화를 하고 관리 감독을 했다면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 애경, 이마트 등의 어떤 가습기 살균제 이런 문제들을 진작에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과거 법이 만들어질 때 사실은 선진국도 같은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2007년도에 유럽이 REACH가 되면서 체제의 변화가 생기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 화평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아쉬운 것은 방식은 같을지 모르겠는데 제도가 좀 허술하게 운영됐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제도도 미비하겠지만 일단 저는 이게 예산, 인력 등등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유명무실했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대규모 치사사건을 유발하지 않았나, 그래서 환경부도 이 문제의 해결이 되게 시급하고요,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은 CMIT 또는 MTI 성분 말고 기존에 이미 폐질환을 유발하는 물질로 인정받았던 PHMG 또는 PGH 이 두 물질에 대해서도 지금 사건이 난 지 3~4년이 넘어가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PGH라는 물질은 지금 여전히 심사를 위해서 실험 중이다 그러는데 실험만 몇 개월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PHMG라는 제품은 지금 외국 문헌을 토대로 어류독성만 판명돼 있고 아예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건 난 지가 몇 년인데 경구독성, 경피독성, 흡입독성 이것 실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이런 늑장대응에 대해서 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사실 사건 난 후에 뒷수습하는 것도 비탄 받을 노릇인데, 사건 났는데 이제 사건 나고 제품 수거했으니 됐다는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차일피일 넘기고 있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화평법 제정법도 마련하셨지만 이런 문제를 좀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려 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일단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습기 피해자 문제를 구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각 정부부처가 서로 이 문제를 떠밀고 있는 분위기라서 긴급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지금 발의는 안 했고요, 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컨대 석면구제법하고 유사한 그런 법안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환경보건학회들, 법률가, 시민단체, 피해자 모임 등등 이렇게 의견수렴한 법안을 만들어 보았는데,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환경부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부처로 하고, 정부출연금을 위주로 해서 의료비 치료비 요양급여 등 지금 즉각적으로 필요한 긴급구제비용들을 환경부가 좀 운용하는 이런 내용으로 만든 법안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소송을 끌 게 아니라 이런 손해배상에 준하는 어떤 긴급의료비, 생계지원급여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마련해서 운용하는 이런 안인데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이미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는 교통정리가 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고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원님이 의원발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원발의가 되면 국회에서 적절히 심의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화평법에 이번 통과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앞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세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무총리실 위주로 뭔가 추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년 전에 TF팀 꾸린다고 해 놓고 이번 대선 후에 확인한 결과 국무총리실은 예방대책만 마련하라고 했지 구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고려는 없다라고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CMIT라는 물질 유해성 심사하셨고 유독물로 지정하셨는데, 이번에 사실 이

상임위 기간에 제가 질의하고 폭로를 해서 이제서야 애경이나 이마트 제품 쓰는 분들은 소송에 겨우 참여하게끔 된 그런 책임도 환경부에 있고요. 그래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환경부는 이 사태에 좀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말입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이 문제는 정말 제조사, 판매사뿐만 아니라 국가 책임이 있는 사안인데 거기에 지금 해당 당사자들이 소송 중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난 3년에서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좀 요청을 드리자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에 지금 굉장히 천문학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의료비라든가 수술비 이런 것들을 지출하고 있는 가습기 피해자들, 대략 한 200여 명에 대한 긴급구제를 좀 조속히 추진했으면 하는 이런 법안이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이번에 상정을 해서 처리가 되어졌으면 이렇게 좀 바라고, 지금 또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좀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이런 환노위 4월 임시회가 됐으면 하고, 모든 위원님들과 환경부 부처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장관님께서 이 피해자분들을 한번 면담을 저와 함께 이렇게 가져 주십사 하고 좀 요청드리는데, 고려가 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분들은 지금 사실 완전히 버림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대체로 질의나 대체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한정애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잘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위원장님 서면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하나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잘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부터 81항까지의 의안을 각각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의한 의안 중 의사일정 제5항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68항과 제69항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2건 등 3건의 제정 법률안과 제45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4월 16일 화요일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소위원회 회의로 하고, 공청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21항 사육 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는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8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배기운·김미희·민홍철·오병윤·김재연·이석기·이상규·최규성·유은혜 의원 발의)

8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박성호·강기윤·이우현·서용교·김성태·최봉홍·이종훈·강은희·김상민 의원 발의)

8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폐

지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만우·김관영·박인숙·유성엽·이인제·이재균·민홍철·문정림·조현룡 의원 발의)

8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도종환·문병호·박남춘·배기운·백재현·서영교·신경민·우윤근·유대운·유승민·유승희·유은혜·이학영·전병헌·전정희·주승용 의원 발의)

8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현재·이종훈·고희선·정문헌·이명수·이자스민·강석호·김동완·김종태·이노근·박성호 의원 발의)

8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하나·박홍근·은수미·김경협·윤관석·이미경·우원식·이상규·남인순·유승희·한명숙·원혜영 의원 발의)

8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배기운·전정희·인재근·최민희·김춘진·홍종학·백재현·강기정·이춘석 의원 발의)

8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오제세·김민기·최규성·홍의락·김현미·양승조·박남춘·최민희·김성주·김광진·김영록·안규백·이종걸·정성호·김우남·강기정·김관영·박영선·김춘진·원혜영·유기홍·배기운 의원 발의)

9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현재·이종훈·고희선·정문헌·이명수·박성호·박상은·강석호·김동완·김종태·이노근·이자스민 의원 발의)

9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하태경·전하진·문대성·김세연·김재경·김동완·김상민·이노근·이강후·여상규·신경림·정갑윤 의원 발의)

9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하나·박홍근·은수미·김경협·윤관석·이미경·우원식·이상규·남인순·유승희·한명숙·원혜영 의원 발의)

9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880)

9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445)

9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김상희·박원석·박홍근·서기호·신경민·심상정·우원식·윤관석·전병헌·정진후·홍영표 의원 발의)

9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이만우·정희수·김정록·류지영·전정희·민현주·강은희·이한성·김상민·최봉홍 의원 발의)

9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신장용·권은희·정문헌·이만우·김광진·이종진·김춘진·박성호·박인숙·김태원·최봉홍·이에리사 의원 발의)

10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배기운·전순옥·김성곤·최원식·윤관석·노웅래·안규백·강기정·이종걸·홍종학·조정식·정성호·심재권·김춘진 의원 발의)

10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주영순·서용교·김상민·김기선·이완영·김한표·황주홍·김용태 의원 발의)

10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정진후·노회찬·김선동·오병윤·박원석·김제남·이석기·김재연·김미희 의원 발의)

1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박완주·신장용·백재현·박홍근·김우남·김춘진·김동철·이원욱·배기운·김태년·김영주 의원 발의)

1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춘진·유대운·민홍철·전해철·김경협·안민석·우윤근·김기준·이낙연 의원 발의)

10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박완주·신장용·백재현·박홍근·김우남·김춘진·김동철·이원욱·배기운·김태년·김영주 의원 발의)

107.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전순옥·장하나·이인영·이만우·민홍철·김기준·한명숙·서영교·정성호·김승남·배기운·유대운·김경협·홍의락·김성곤·이윤석·이낙연·최민희·유성엽 의원 발의)

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이춘석·유대운·최동익·김용익·한정애·이낙연·전정희·배기운·김재윤·서영교 의원 발의)

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최동익·강창일·이진복·박수현·김영주·김관영·문희상·양승조·김우남 의원 발의)

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李宰榮·손인춘·김정록·김현숙·박민식·김명연·강석훈·이현재·신의진·홍지만·윤영석·유승민·윤명희·이종훈·이에리사·신경림·류지영·안종범 의원 발의)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윤후덕·김재윤·유성엽·박원석·서기호·최민희·심상정·박홍근·김경협·전정희·김우남·정진후·우원식·김춘진·이미경·노웅래 의원 발의)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인재근·정성호·이인영·김현미·우원식·박완주·유은혜·백재현·최민희 의원 발의)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김우남·이낙연·배재정·박원석·김태년·이미경·김경협·김승남·최규성·박영선·홍종학·이상직·박홍근·유대운·홍영표·진성준·김현미·김민기·은수미·인재근·유은혜·최원식·이만우·이목희·김재윤·김재원·우상호 의원 발의)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문재인·최원식·정성호·김기식·김성주·최재성·진선미·홍종학·박영선·박완주·이춘석·김용익·한명숙·장하나·이인영·홍영표·남인순·김기준·김경협·한정애·이목희·김현미 의원 발의)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강은희·손인춘·김정록·윤명희·김상민·민현주·이재균·주영순·박상은·신성범·송영근·이에리사 의원 발의)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김선동·오병윤·이석기·김미희·김재연·정진후·김제남·金永柱·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688)

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오병윤·김미희·김재연·김선동·박주선·정진후·인재근·이석현·이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3129)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김성태·서용교·김한표·전하진·신성범·이완영·신경림·정문헌·주영순 의원 발의)

1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김우남·서기호·은수미·안규백·유기홍·박주선·주승용·안민석·김춘진 의원 발의)

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안규백·이낙연·이상직·전병헌·이인영·전정희·홍종학·남인순·정성호 의원 발의)

1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하나·박홍근·은수미·김경협·윤관석·이미경·우원식·이상규·남인순·유승희·한명숙·원혜영 의원 발의)

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한명숙·안민석·장하나·조경태·김경협·심상정·노회찬·은수미·민병두·홍영표·김기준 의원 발의)

1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배기운·최민희·홍종학·심재권·김태년·김광진·안민석·김동철·박주선·이춘석·김관영 의원 발의)

1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최봉홍 · 주영순 · 서용교 · 김경협 · 추미애 · 이강후 · 김기선 · 김상민 · 정갑윤 의원 발의)

12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김정록 · 이한성 · 김태원 · 이명수 · 이종진 · 박덕흠 · 김성찬 · 주영순 · 박성호 의원 발의)

12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유성엽 · 배기운 · 김재윤 · 전순옥 · 윤관석 · 주승용 · 김재연 · 조정식 · 홍종학 · 강기정 의원 발의)

1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 이만우 · 정희수 · 류지영 · 홍지만 · 김한표 · 김춘진 · 송영근 · 강은희 · 고희선 의원 발의)

1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김정록 · 강길부 · 김태원 · 이명수 · 김성찬 · 권성동 · 이만우 · 박성호 · 김기선 의원 발의)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이춘석 · 유대운 · 최동익 · 김용익 · 한정애 · 이낙연 · 전정희 · 배기운 · 김재윤 · 서영교 의원 발의)

131.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홍영표 · 강동원 · 유대운 · 문병호 · 김상희 · 박민수 · 김윤덕 · 김성곤 · 정희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0)

13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김우남 · 홍문표 · 김영록 · 이춘석 · 김윤덕 · 최규성 · 윤명희 · 강기정 · 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2874)

13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 · 민현주 · 홍지만 · 김정록 · 이재영 · 강은희 · 문대성 · 李宰榮 · 남경필 · 안종범 · 이에리사 · 민병주 의원 발의)

134.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 · 李宰榮 · 손인춘 · 김정록 · 김현숙 · 박민식 · 김명연 · 강석훈 · 이현재 · 신의진 · 홍지만 · 윤영석 · 유승민 · 윤명희 · 이종훈 · 이에리사 · 신경림 · 류지영 · 안종범 의원 발의)

135.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 · 이낙연 · 홍지만 · 이재영 · 이한성 · 김장실 · 박성호 · 전정희 · 박인숙 · 이에리사 · 김태원 · 길정우 의원 발의)

136.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 오제세 · 김민기 · 최규성 · 홍의락 · 김현미 · 양승조 · 박남춘 · 최민희 · 김성주 · 김광진 · 김영록 · 안규백 · 이종걸 · 정성호 · 김우남 · 강기정 · 김관영 · 박영선 · 김춘진 · 원혜영 · 유기홍 · 배기운 의원 발의)

137.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경협 · 김관영 · 김상희 · 김용익 · 배재정 · 서영교 · 유은혜 · 은수미 · 이미경 · 진선미 · 최동익 · 홍영표 · 홍종학 · 한명숙 의원 발의)

138.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 · 하태경 · 전하진 · 문대성 · 김세연 · 김재경 · 김동완 · 김상민 · 이노근 · 이강후 · 여상규 · 신경림 · 정갑윤 의원 발의)

139.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 · 권성동 · 김진태 · 유일호 · 이상일 · 박인숙 · 박창식 · 김한표 · 류지영 · 이자스민 의원 발의)

140.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배기운 · 이찬열 · 최재성 · 전병헌 · 최원식 · 윤관석 · 이강후 · 민홍철 · 김재윤 · 서기호 · 유성엽 · 남인순 의원 발의)

141.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홍영표 · 이완영 · 주영순 · 서용교 · 김경협 · 최봉홍 · 김영주 · 이강후 · 정의화 의원 발의)

14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

원 대표발의)(윤명희・이만우・정희수・류지영・홍지만・김한표・김춘진・송영근・강은희・고희선 의원 발의)

1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강은희・손인춘・김정록・윤명희・주영순・김상민・신성범・민현주・이재균・박상은・송영근・이에리사 의원 발의)

1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만우・정희수・류지영・홍지만・김한표・김춘진・송영근・강은희・고희선 의원 발의)

1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최봉홍・서용교・김상민・김성태・홍지만・이한성・김현숙・강석훈・박대동・이철우・김한표・김상훈・김광림 의원 발의)

1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강동원・박남춘・박원석・유기홍・유성엽・이인영・인재근・최동익・최민희 의원 발의)

1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강기정・김우남・남인순・배기운・이낙연・이인영・이학영・이춘석・정성호・홍종학 의원 발의)

1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강기정・김경협・김동철・김상희・김성곤・김성주・김진표・김태년・김한길・남인순・노웅래・노회찬・도종환・박남춘・박주선・박홍근・배기운・배재정・백군기・백재현・부좌현・설훈・송호창・신기남・신장용・심상정・유기홍・윤호중・은수미・이미경・이석현・이인영・이종걸・이해찬・인재근・임내현・장하나・정호준・조정식・최동익・최민희・한정애・홍영표・홍종학 의원 발의)

149. **미성년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이한성・이자스민・강기윤・김정록・정희수・서상기・유승우・정문헌・홍지만 의원 발의)

150.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김성태・서용교・신성범・정병국・김학용・金永柱・김세연・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

15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李宰榮・김상민・원유철・김세연・민현주・이만우・이종훈・진영・이명수・권성동・윤상현・이주영・남경필・권은희 의원 발의)

15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태년・전순옥・이완영・김태원・유대운・김민기・홍종학・배기운・김재윤 의원 발의)

15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배기운・우원식・장병완・김관영・최규성・정호준・이미경・안민석・신경민・주승용・김광진 의원 발의)

15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길정우・권성동・황진하・김장실・인재근・강은희・권은희・김상훈・함진규・강기윤 의원 발의)

1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김기준・민홍철・배기운・안규백・유기홍・유성엽・윤관석・은수미・이원욱・인재근・전정희・한명숙・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1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7. **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강은희・손인춘・김정록・윤명희・주영순・김상민・신성범・민현주・이재균・박상은・송영근・이에리사 의원 발의)

1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문대성・李宰榮・홍일표・김세연・김현숙・남경필・김태원・박성호・여상규・이에리사 의원 발의)

1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박완주・신장용・백재현・박홍근・장병완・김우남・김춘진・이원욱・김현・배기운・김영주 의원 발의)

1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김제남・노회찬・박원석・정진후・은수미・장하나・전순옥・이미경・강동원・한명숙・서기호 의원 발의)

1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

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한정애·장하나·한명숙·김경협·은수미·심상정·홍영표·김우남·홍의락 의원 발의)

1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하나·박홍근·은수미·김경협·윤관석·이미경·우원식·이상규·남인순·유승희·한명숙·원혜영 의원 발의)

1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배기운·전정희·인재근·최민희·김춘진·홍종학·백재현·강기정·이춘석 의원 발의)

1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5.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우윤근·배기운·최민희·남인순·박민수·최원식·배재정·이상민·이명수·김경협·김윤덕·유성엽·박홍근·유대운·민홍철·안민석·문병호 의원 발의)

16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김관영·조정식·정세균·강기정·박수현·신장용·전정희·황주홍·강동원·김윤덕 의원 발의)

167.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임내현·장하나·김경협·은수미·한명숙·한정애·박수현·우원식·홍영표·김진표·이낙연·윤호중·김용익·심상정·신장용·김미희·강동원·김상희 의원 발의)

16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강은희·박상은·손인춘·김정록·윤명희·주영순·김상민·민현주·이재균·신성범·송영근·박덕흠·이에리사 의원 발의)

16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영록·김승남·도종환·이종걸·박홍근·정청래·강기정·추미애·이용섭 의원 발의)

17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배기운·김우남·이명수·이낙연·진성준·이상직·문병호·김태년·이인영·권은희·김태원·정성호·윤관석·홍종학·전순옥·김성곤·전정희·김미희·유대운·박남춘·전해철·이원욱·박혜자 의원 발의)

17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정문헌·한기호·주호영·김정록·노철래·김세연·정갑윤·김성곤·이자스민 의원 발의)

17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문정림·김성곤·배기운·남인순·유성엽·이상민·김승남·강기정·안홍준 의원 발의)

17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강기정·문병호·이언주·신경민·최민희·배기운·홍종학·김기식·박원석·강동원 의원 발의)

17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재인 의원 대표발의)(문재인·이상민·도종환·홍영표·김현·김용익·윤후덕·임수경·배기운·최민희·배재정·유대운·서영교·김윤덕·진선미·민홍철·전해철 의원 발의)

17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최민희·배기운·강동원·이춘석·전병헌·안민석·유은혜·정진후·전순옥 의원 발의)

17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만우·신의진·김을동·김한표·정희수·조명철·홍문표·홍지만·김춘진·고희선 의원 발의)

17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이상직·최규성·윤관석·김성곤·신경민·유성엽·안민석·우원식·임내현·도종환·강기정 의원 발의)

1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손인춘·정갑윤·김상훈·정희수·여상규·김태흠·전하진·하태경·김기선·노철래 의원 발의)

18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배기운·이미경·은수미·홍종학·김미희·박홍근·이낙연·신학용·김재연·정호준 의원 발의)

182.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김한길 의

원 대표발의)(김한길・전병헌・한명숙・윤관석・최민희・김경협・신장용・김윤덕・추미애・진성준・신경민・민홍철・정성호・홍종학・김광진・전정희・유성엽・주승용・강기정・유대운・황주홍・김재윤・오제세・김성곤・유은혜・도종환・배재정・변재일・김영주・이인영・김영환・김동철・문병호・노웅래 의원 발의)

183.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84.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8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86.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87.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88. 차별금지법안(김재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89. 차별금지법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90. 차별금지법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91.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신계륜 의사일정 제82항~제191항까지 101건의 법률안, 9건의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여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여야 6인 협의체 합의사항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려서 이것을 여야의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공식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4월 12일 여야 6인 협의처에서 결정한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방안 등 합의사항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합의사항 중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개선,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마련, 모성보호 등을 위한 관련 법률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 개정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큰 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시급히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과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 등은 19대 국회 시작 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안건이며,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4월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여 오늘부터 법안심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지는바, 정치적 합의가 우선될 수 없음에도 여야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법률안 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심히 침해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여야 간 큰 틀의 합의사항은 존중합니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그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의 의결입니다.

혹시 이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의견이 계신 분 있습니까?

○김경협 위원 입장에 전반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이번에 제출돼 있는 법안들이나 이런 경우에 보니까 국토부나 다른 부처에서 기존에 환경부나 노동부의 관할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빼앗는 듯한 이런 법안들이 많이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부나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고, 역시 이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조금 더 한 발짝 앞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여야 6인 협의체에서 다 해 버리고 상임위 권한까지 다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냐 싶은데, 우리 환노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표에는 동의하지만 환노위가 이것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계륜 잘 알겠습니다. 환노위의 관심과 환노위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수미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신계륜 예.

○은수미 위원 제가 정책위에서의 논의 과정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새누리당 및 저희 민주당 동료 위원들께도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원래 새누리당이 대선공약 실천 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이 반대하기도 어렵고 또한 정권 초기에 우선 법안을 처리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를 하면서 당시 초기 실무협의 과정에서 여당 측은 68건의 법안을 제안을 하셨고요, 저희 민주통합당은 합의가 될 수 있는 가능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59건의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환노위 관련 특이사항이 뭐였느냐면 당시 새누리당은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겠다며 13건을 제안을 하셨고 민주당이 7건이었는데 새누리당은 합의 가능성을 무론하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 관련 법안, 예를 들어서 사내하도급 법안이나 기간제 관련 법안이 다 들어갔고요. 민주당은 합의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법안을 빼다 보니까 비정규 관련 법안이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대로 논의를 하다가는 새누리당의 경우는 사내하도급 법안이나 기간제 법안 그리고 그중에는 우리가 도저히, 환노위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 들어가서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다음 민주당은 아예 법안을 제안을 못 한, 안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제안이 된 겁니다.

다시 제안이 돼서, 민주당 측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정책위에서 뭐라고 의견개진을 했느냐면 '이렇게 새누리당의 비정규법안만을 중심으로 논의가 돼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비정규 법안이 통합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려를 표명했던 게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 등 비정규 관련 법안만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자칫 국민들한테는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당론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민주당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조차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이것을 수정을 해서 결국 현재 여야 협의체 환노위 관련 법안이 8+6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개는 기존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8개, 나머지 6개가 비정규 관련 법안입니다.

그래서 새누리와 민주당 모두 환노위하고 교문위에서 제출된 비정규 관련 법안 6개를 8+6으로 했고, 특히 6개의 비정규 관련 법안은 통합 논의, 즉 병합 심의하기로 하면서 아마 금요일 날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협의체에서 환노위 법안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의 법안까지도 새누리당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의를 해 주다 보니 관련 상임위들의 무력화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 신계륜 위원장님 및 여야 간사, 그리고 다른 위원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8+6, 즉 총 14개를 논의하는 것은 그대로 가되 이것을 주로 환노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노동위원회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 실천법안 우선적으로 이렇게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임위 무력화의 우려가 굉장히 있지만 제안을 한 면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불가피한 면, 제가 이 법안이 확정된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란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면이 있고, 이것이 새누리당이 이렇게 제안한 것에 동의를 해 주다 보면서 결국 이렇게 된 면이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비정규법안은 그 특성상 통합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 환경노동위원회 입장, 즉 통합 논의를 원칙으로 해서 비정규법안을 이 환노위에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은 저간의 사정이 그러한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실천법안 우선 논의를 새누리당이 제안한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도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더 말씀하시겠어요?

○최봉홍 위원 지금 입장 잘 봤습니다.

맨 밑에 두 줄 제외하고 위에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여야 간 큰 틀 합의사항을 존중합니다만' 했는데 이 이후로부터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도 기이 양당

6인위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저도 오늘 받아 보니까 13개 법률인데 이게 지금 전부 상임위에,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에 환경노동위의 입장을 충분히 발표를 하고 '여야 간 큰 틀 합의사항은 존중합니다만' 해 놓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그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절차에 따라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입장을 쓰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같은 말인데요.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이게 이렇습니다. 합의를 여야 간에 큰 틀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월 상반기까지 이러한 법안을 여야가 분명히 합의하겠다고 약속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 대 당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 6인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도 존중하고 그것은 의미 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환경노동위원회 중심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환경노동위 입장은 위원회 전체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양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바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2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의원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고용한 건설근로자, 즉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부금을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공제부금 금액을 1일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1인당 1일 공제부금은 4200원이며, 연평균 근로일수로 계산해 볼 때 연평균 적립금이 22만 8000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실상 퇴직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을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만 원 이상으로 하되,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로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액과 납부'를 '납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건설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렴하고 법제실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저 역시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동안 현장에서 플랜트 배관 조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 피부로 실감한 바가 있습니다. 부디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안이 개정되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완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기본으로 의결해 주시고 제가 제안한 것도 함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0항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의원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의원입니다.

작년 8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법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의 사내하도급 계약 관련 내용입니다.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의 사내하도급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원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경우 60일 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사업주의 수급사업주 교체 시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우선 채용 등을 위한 내용입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원사업주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 간에 차별적 처우를 못 하도록 하고, 원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적격자가 우선 채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차별 없는 임금 및 경영성과금,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위한 내용입니다.

수급사업주는 원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영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전액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수급사업주와 협의한 후 원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금 및 복리후생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사업주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도급대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은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에도 다수의 판결이 동일한 취지로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 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급사업주와의 협의 후 원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4조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투명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모쪼록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안효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9항, 제94항, 제95항, 제96항, 제102항, 제126항, 제156항, 제164항, 제169항, 제174항 등 총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불산 누출사고 등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증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예방을 위해 도급인이 유해·위험물질 제조·취급설비의 수리·청소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급인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년퇴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 전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2건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자가 65세 이후에 실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실업급여 전용계좌로 입금된 실업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한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여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재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는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섯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잡월드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섯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등을 지급받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시도한 근로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사주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거나 강제로 할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여덟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보험급여가 입금된 보험급여 전용계좌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이어서 인사 발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일부 간부들의 변동이 있어 새로 임명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입니다.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89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9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겠다는 의원님들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 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양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2항부터 제182항까지 101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83항부터 191항까지 9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 가운데 주요 법안에 대해서만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대표발의 의원님들 존칭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82항부터 84항까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82항 김선동 의원안은 공제부금의 일액을 현행 4000원에서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금액의 인상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인상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83항 이완영 의원안은 법 제명을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정책 대상을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건설기계사업자까지 확대하며 건설근로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법 제명의 변경은 실체적 규정의 개정 여부와의 연계가 필요하고 정책 대상 확대는 사업주의 공제부금 분담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사일정 제85항부터 89항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85항 김광진 의원안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카드수수료 부담 방식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전면적으로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89항 정부안은 고용보험료 부과대상 연령을 조정하고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의 법적·

윤리적 의무인 산재예방 활동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부터 95항까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94항과 95항, 고용보험법 정부안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를 확대하고 65세 이후에 이직한 피보험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연령조정 대상에 자영업자도 명시하고 개정안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6항, 정부가 제출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자 및 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장년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며 대기업에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의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도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항부터 제101항까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98항 주영순 의원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신체조건이나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미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101항 김성태 의원안은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고용 위기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행정·재정·금융상의 특별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입니다.

107항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반환토록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제출된 채용서류의 활용가치를 제고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직자의 권리보호를 이처럼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함께 기존의 직업안정법에 규정하는 것이 낫다는 반대의 견해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108항부터 124항까지 근로기준법입니다.

9페이지, 제114항 은수미 의원안의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구제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지만 현행 이행강제금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15항 최봉홍 의원안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사건처리의 공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18항 김상민 의원안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할 사항을 추가하고 서면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 서면교부제도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벌칙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3항 정청래 의원안과 124항 김성태 의원안은 경영상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의 경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30항부터 141항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31항 김춘진 의원안은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에의 부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33항 김현숙 의원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의 신용과 명예 침예 등 부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하단의 137항입니다.

한정애 의원안은 가사사용인과 상시 5명 미만

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나 행정감독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4페이지 하단의 김성태 의원안은 한국일가정양립진흥원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체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설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5페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43항 최봉홍 의원안은 근로자공급사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45항 이완영 의원안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상급단체의 파견을 포함하고 과반 노조 등장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 변경 및 예외적 단체교섭 인정 등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대효과도 있습니다만 노동조합 간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146항부터 148항까지 장하나 의원, 김광진 의원, 한명숙 의원안은 직장폐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서 노사균형 및 노사대등의 원칙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150항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열악한 고용환경에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제정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간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155항 김경협 의원안은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건강센터라는 명칭을 법에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56항 정부안은 현행 법령 및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만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수준을 조정하고 과도하게 하위법령에 위임한 근거를 개선하며 부칙의 시행일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57항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재해근로자 또는 재해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자립을 촉진하려는 취지는 타당성이 크지만 다른 법률과의 중복 여부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61항 신계륜 의원안은 진폐의증 근로자에게 보상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성이 있지만 진폐의증이 작업적 노출에 의한 질병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상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68항입니다.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당금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으로 체불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체당금 사건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한 다음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5항과 176항, 문재인·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매년 3% 이상씩의 청년고용의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고용의무화는 지난해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개정안의 입법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고용의무화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장애인 등과 같은 정도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의 177항부터 제181항까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180항 박대출 의원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 181항 김광진 의원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청년대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층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3항부터 191항까지 9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1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계륜 김양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질의시간을 포함하여 오전과 마찬가지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봉홍 위원님!

○최봉홍 위원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폐지안하고 아마 3건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팀에게 회의가 열리기 전에 노정 간의 협의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노정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입법소위 때까지 저한테 알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에 보면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데, 이것 잡월드 주장인 모양인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잡월드에서는 학생들이 직업·직장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상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잡월드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그것을 증액해서 하면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산의 증액 부분이 아니고 현재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잡월드는 포괄적 규정에 의해서 출연금을 반영·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법률적 근거 없는 것을 근거 만든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법안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최봉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12번을 보면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정의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특정사업주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에 넣자는데 사용자에 대한 얘기들은 그 법 모법에 없습니다.

지난번 국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은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인데 특권이 비정규직보다도…… 근본적으로 노동부에서 장관님이 새로 부임한 이래로 지금 이 근로자·사용자 문제는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다 일임을 해 가지고 사회적인 대타협으로 그 개념을 재정립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단지 특고의 경우에 근로기준법하에서 사용자·근로자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 부처의 입장에서는 특고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최봉홍 위원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다양하고 또 특수한 환경, 실제로 일을 하는 환경 자체가 상당히 특이하기 때문에 노사 그리고 이해당사자 등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서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봉홍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편향적으로 개정한다기보다도 노동부가 시기나 그런 것을 채택해 가지고 국회에다 건의를 하고 노사정위원회 그런 데 얹어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지금 저희 노사정위원회에 관련 논의기구를 마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문위원 의견으로서는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법률안, 실제 현재 서류 접수하고 30일이지요? 합의하면 1차, 2차 연기하고, 그다음 또 다시 14일, 14일, 14일 3차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 못 받은 근로자 소요 일수가 전체 132일입니다.

제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그 날수를 20일, 20일로 줄이고, 14일을 7일로 이렇게 해도 전체 날수는 81일입니다. 이것 필요 있다고 안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처리기한을 단축해야 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실무팀에서는 날짜가 30일, 20일로 너무 촉박하다, 지방은 괜찮은데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 20일을 채울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1년 체불이 된 근로자들은 밥줄이 끊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체불이 생기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더라도 20일씩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도산기업이 발생하게 되면 도산기업의 특성상 사업주가 출석을 기피한다거나 또 실제로 사업과 사업주의 재산 현황의 파악이라든지 정확한 체불 내역 등을 확인하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현행법이 30일, 14일로 돼 있으나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러면 정 그렇다면 저는 볼 때 체불업자들을 확인하는 건 핑계입니다. 정 안 된다면 1차에 한해서 30일을 하더라도 그다음부터라도 20일, 20일 해 가지고 기간을 줄여 주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통합교섭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노동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현장 노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같은 조건의 한 회사가 여러 군데 사업장을 가지고서 별도, 별도 분리를 하기보다도 오히려 통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모든 경비나 업무행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보고 그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리교섭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통합교섭은 법이 없어서 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을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교섭을 노동위원회에 넣었을 때 심의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초기업단위 교섭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초기업단위 교섭을 어떤 교섭을 위해 사용자단체 규정을 강제하는 방향의 입법은 노사자치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최봉홍 위원 노사가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강제를 안 하고 같이 집어넣어도 그 조항이 없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노동위원회의 현실입니다. 노동자도 노동자끼리 같이 교섭하자, 그다음에 사용자도 사용자끼리 같이 교섭하자, 이래 가지고 집어넣는데도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하니까 답답한 일 아닙니까?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최봉홍 위원님 다 하셨어요?

○최봉홍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더 해도 괜찮습니다.

○최봉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협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서면으로……

○위원장 신계륜 김경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관련해서 심재철 의원님께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폐지법안을 제출을 했고요, 심재철·이미경 의원님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을 대체하는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법을 제출을 했습니다. 핵심 요지는 건설기능인력 양성 정책을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도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검토의견은 좀 부정적입니다. 기존의 건고법과 중복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현재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하고 국토위하고 부처 간에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2012년 9월 27일 날 국무총리실장 주재 입법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동 법안의 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 법안이 이렇게 국토위 쪽에서 추진되는 이유가 좀 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건설노동자들이 건설노조가 주도해서 법안을 국토위에다가 소개를 한 거거든요, 국토위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는 건설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를 택하지 않고 국토부를 선택한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노동자의 노동문제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건설노동자들의 어떤 수요자의 관점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정책들인데 실제로는 이게 그동안에 해 오는 사업들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건설기능인력 훈련사업,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진행됐던 과정들을 보면 건설노동자들의 참여가 상당히 어려운 주간교육 시간, 그다음에 노사 특성이나 업종들을 무시하는 일률적인 규제, 13년부터 베이비부머 참여 비율을 강제해서 건설노동자 모집이 안 된다,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노사공동훈련으로 그래도 처음에 상당히 의욕 있게 출발했던 사업들이, 물론 노사공동훈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좀 미숙한 점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게 전환되면서 오히려 더 노동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정책이 돼 버렸고, 그래서 드디어 국토부 쪽에다가 아마 요청을 하게 되는 결과까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튼 인력정책, 직업훈련은 공급자 중심의 관점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노사가 협력해서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시장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하여튼 노사관계의 안정 측면이나 노사참여형 인적개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다소 좀 서투른 면이 있더라도 아예 이런 것들을 싹을 자르기보다도 노동부가 노사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노사공동형 직업훈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애초에 노사공동훈련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사가 참여해서 함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산업 차원에서 인력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건설 관련 노동조합하고 건설근로자 그리고 사업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의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만요인들을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협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 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바꾸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간제법에서 적용제외 사유를 고령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법적인 조항들에 따라서 준고령자를 적용할 때와 고령자를 적용할 때가 좀 다르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장년으로 이렇게 해서 다 통합을 했을 경우에 다른 부작용이나 아니면 이것을 별도로 적용해야 될 필요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고령자, 준고령자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년으로 변경하더라도 지금 검토해 본 결과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라든지 재취업 지원제도 운영에는 별로 변함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기간제법에서 적용제외 사유로 고령자, 55세 이상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장년으로 해서 만약에 50세 이상으로 바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경협 위원 확대될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50세 이상의 고용 불안정

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기간제법은 55세로……

○김경협 위원 그런 것은 55세, 그러면 나이로 규정을 할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명칭에 상관없이 연령 기준이기 때문에 55세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이완영 위원님, 그리고 주영순 위원님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 이완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사내하도급법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반대 의사가 분명히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야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당정 협의를 거쳐서 제출한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정부 제안 법을 좀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 아마 인사청문회 때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아예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제안하고 있는 법은 그냥 도급인, 수급인 사이에서 상당히 깊이 관여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렇게 관여하기 시작하면 또 불법파견 문제 검토 안 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수급인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도급인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한다' 이러면 결국은 또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 추가로 나오는 문제점을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예 이런 유해·위험 작업은 이제는 근본적으로 원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어제도 또 울산에서 발생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어제도 울산에서 삼성정밀화학에서……

○이완영 위원 제안을 이렇게 했지만 법안 다룰 때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 점은 다시 한번 해 보는데,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정비업체들이 하도급을 해서 하나의 산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도급을 줄 수 있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방안을 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완영 위원 지금 워낙 도급, 파견, 이런 간접고용이 늘어나는 마당에서 이런 핵심적인 업무며 또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소한, 아니면 기업 규모를 좀 맞추어서라도 '100인 이상,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는 직접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든지 뭔가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것 아닌가, 법안 소위 때 계속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른바 전직지원서비스(outplacement)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또 과태료로 해 놓았어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근로자들이 안 하려고 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왜 이 지원 대상에 들어가서 내가 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대상으로 쉽게 말해서 찍혀서 내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근로자가 그러면 신청을 권고를 했는데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의무화해 놓고 벌칙 부여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지적하신 대로 현황 지적은 정확하시고요. 그래서……

○이완영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의무화는 좋은데 이 과태료 500 하는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들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검토해 놓은 게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제시하신 개정안 자체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는 또 사업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화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근로자가 신청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럴 경우에 벌칙을 부여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서 지원금 주는 거지요, 훈

련비는?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연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완영 위원 1인당요? 지원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직지원서비스 훈련하면 기업에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예.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심의관직무대리 이명로 고령사회인력심의관 대행하고 있는 이명로입니다.

전직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이완영 위원 지원 수준을?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심의관직무대리 이명로 지원 수준이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잡월드, 고용정책 기본법에 경비 지원근거를 만들겠다 했는데 한국잡월드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 정도 되면 독립법으로 해서 뭔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 저는 창조경제 중의 하나 중요한 것이 직업의 숫자를 늘려 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사업 영역을 좀 넓혀서 독립적인 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자, 법안과 관련 없는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경영평가가 한창 중인데요, 노동부가 공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지표가 있는데 기재부에 영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장에서 노사상생협력 유공,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터 우수기업 이런 것 되면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평가위원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고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지금이라도 기재부에 요청해서 그 평가위원들한테 그 제도를 알고 지침대로 좀 가점을 주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뭐 기준만 정해 놓고 기재부에 다 맡겨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있는 대로 충실하게 지켜져야 하고 또 공기업들도 다른 민간 기업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또 실제로 저희 부에서도 평가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완영 위원 직접 노동부에서 했다면 모를 일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위원들한테 꼭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다시 확인해서 확실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순 위원님 질의합니다.

○朱永順 委員 주영순 위원입니다.

방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도 일부 있는데요.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삼성전자, 대림산업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원청인 대기업이 유해설비의 안전관리, 보수유지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법안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 환노위에서도 시급히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있어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내용인데, 개정안 제29조5항을 보면 원청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 3항 원청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벌금한도도 이 수준으로 최소한도 좀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제 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하청업체나 중소기업들은 수십 년간 원청업체에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생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러

면 이 기업들이, 이러한 대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해서 그분들이 자유로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기업들이 하청을 주더라도 반드시 그 책임은 대기업에서 질 수 있도록 강한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발암성 물질 등 유해성이 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측정 시 사업자 측정기관이 계약해서 노동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은 그 투명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안 40조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규 화학물질에만 사업체가 유해성, 위험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기존 화학물질도 포함시켜서 조사 결과 제출 및 개선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취지지만 사업체에서 유해성, 위험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자율적인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동부가 적극 참여하는 방식을 병행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우선 말씀하신 후자 건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 객관성과 중립성이 지금보다 더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29조5항 위반 시의 벌칙은 제3항 위반 벌칙과 같이 수수료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장관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자꾸 화학사고가 삼성이고 현대고 대림이고 많이 나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기업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물질을 하청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한테 미루는 겁니다. 책임은 대기업이 갖되 지금까지 그것을 몇십 년 동안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붙어서 지금 일을 해 먹고 있는데 그 줄 자체를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 생계가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맞는 기술인력을 보강을 하고, 그 두 가지를 꼭 장관님이 명심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입된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의 이미지 손상 또 주가 하락 등의 이유로 경영주가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의 취득이나 보유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잡고자 이 법의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 시 벌칙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사주 취득강요 제도를 실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벌금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도 벌금한도가 최하 3000만 원, 또 벌금한도를 상향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취지는 근로자 기숙사나 휴양시설 등 근로복지시설 구입 시 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해 근로복지시설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그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기금의 기본재산은 주식회사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겠습니다.

치면 자본금에 해당합니다. 자본금을 까먹으면 결국 파산하는 것이거든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고 기금의 중장기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금재산 사용의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사용 기능 목적을 가급적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림산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이 말씀드린 대로 1, 2공장 연 매출이 6000억입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두 달 동안을 공장을 묶어놓아 버리면 월 매출이 한 500억 조금 넘는데 1000억의 매출 감소가 됩니다.

대림산업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어

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가 우선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림산업은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사상이 되었는데요, 그 사고가 난 지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중지명령이 1개월 정도 지금 중지명령에 의해서 작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안전진단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끝나야만 저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요, 일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朱永順 委員 언제 그것이 끝납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기업에서 빨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전진단이 끝나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이고,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근로자들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감안해서 공직자들이 좀, 그게 바로 소신입니다.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 잘못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대림산업이지만 그 죄는 따져서 강하게 처벌을 하되 생산활동은 정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가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원칙만 따지고 법만 따져서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2개월, 4개월 걸리면 결국은 대기업의 막대한 피해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어야지 원칙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세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게 조속히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조속히 안전진단이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장님, 앞의 두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벌칙 관련해서는 지금 양형 기준인데, 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벌칙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분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너무 많이 푼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어떤 유연성을 더 가져가자는 데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풀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복지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기본재산의 일부만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답변 끝나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주영순 위원님 질의할 것 더 없습니까?

○朱永順 委員 없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세 번 질문하는데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또 네 번째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처리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좀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고양 덕양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산재통계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산재통계와 관련해서 그때 말씀드린 이후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장관님 내용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방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간단히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니까. 국장님이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교조하고 교사·공무원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께서 지난번에 당사자와 사회적 대화나 협의를 통해서 전향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뭐 구체적인 해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구상 중에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그때 말씀드린 취지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사,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자 때문에 지금 전교조 법적 지위를 상실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고자 문제 때문에 지금 노동부에서는 기어이 노조 법적 지위를 박탈하실 생각입니까?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이 문제가 워낙에 사회·정치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이니까 당사자와 사회적 합의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구상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 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교조가 이제 사회적 어떤 무게감이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과 대치해서 위법한 규약 부분은 좀 수정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좀 협조를 구하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교조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추후에 사회적 논의나 대화를 해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현행법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좀 법적 지위를 잃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심상정 위원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장관께서 말씀하시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 그 조항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법적 지위를 박탈하느니 마느니 국면에 있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로도 이미 다 법적으로 해석이 끝났고 또 ILO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노조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계속 갖고 있고 오로지 지금 정부의 의지만 남아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단결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과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 과정과 절차를 거치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위를 박탈하실 생각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사회적 해법을 찾아보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듯이 먼저 전교조가 위법한 사항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심상정 위원 장관께서 전교조나 공무원노조하고 자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심상정 위원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노동부장관이신데 대한민국에 지금 몇십만 되는 교사·공무원 노조, 정치적인 파급력도 큰 노조와 직접 대면해서 만나 보시고 장관도 새로 취임하셨으니까요, 당사자들의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나 또 이해당사자 간에 어떤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보시라는 겁니다.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알지요. 장관께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장관 권한을 가지고 월권하실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프로세스가 있으면 또 절차도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전교조 지도부가 교육부장관 면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도 한번 지켜보고……

○심상정 위원 저희 방에 여러 차례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안 계신데 우리 김성태 위원님 방에도 갔고 다 갔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장관 한번 찾아뵙고, 또 노동부에 우리 협력관들도 계시고 이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많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의 의지도 말씀드리고 또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 보라

하니까 '만나 주겠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노동부장관이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노조 지도자를 만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굴 만난다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애기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회피하거 대화를 안 한다거나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도 전교조가 합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위법한 사항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님 한번 뵈러 가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관님, 심상정 위원이 발언한 내용,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 문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이, 아마 자료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있고 또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서로 간에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 주무장관으로서 한번 만나서 솔직하게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장님 조언대로 가능한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김성태 위원, 장하나 위원, 한정애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 또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82항~제191항까지의 의안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아까 여야 6인 협의체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 안에 쟁점이 된 노동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는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 그래도 이번에 결론을 내는 그런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충분히 의사가 개진되었으며 분위기도 어떤 식으로든지,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소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의한 의안 중 의사일정 제107항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4월 17일 수요일 오전에 공청회를 엽니다.

공청회는 소위원회 회의로 하도록 하고 공청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150항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는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경협	김상민	김성태	서용교
신계륜	심상정	은수미	이완영
장하나	주영순	최봉홍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청가 위원(1인)

이종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전문위원	김양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윤성규
차관	정연만
기획조정실장	이재현
환경정책실장	백규석

환경보건정책관	송 형 근
기후대기정책관	박 천 규
물환경정책국장	오 정 극
상하수도정책관	김 상 배
자연보전국장	이 찬 희
자원순환국장	박 광 석
대 변 인	홍 정 기

고용노동부

장 관	방 하 남
차 관	정 현 옥
기획조정실장	심 경 우
고용정책실장	이 재 흥
노동정책실장	권 영 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 종 길
노동시장정책관	임 서 정
고용서비스정책관 직 무 대 리	노 길 준
인력수급정책국장	신 기 창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직 무 대 리	이 명 로
근로개선정책관	임 무 송
노사협력정책관	박 화 진
공공노사정책관	시 민 석
정 책 기 획 관	김 재 훈
국 제 협 력 관	최 기 동
기 상 청 차 장	조 주 영